
第60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3年2月23日(火) 午前10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財務局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
 2. 市政開發研究院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
 3. 서울特別市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7.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
 8. 서울特別市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條例案
 9. 企劃管理室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電子計算所包含)
 10.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
-

審査된案件

- o 報告事項 ... 3面
1. 財務局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 ... 4面
2. 市政開發研究院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 ... 33面

3. 서울特別市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 48面
4.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48面
5.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48面
6.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48面
7.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 48面
8. 서울特別市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 48面
9. 企劃管理室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電子計算所包含) ... 85面
10. 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 ... 114面

(10時 35分 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제60회 臨時會 제1차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局長 이하 執行部 幹部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癸酉年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도 실로 多事多難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委員들은 市民의 代辯者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議

案審査, 豫算・決算審査, 行政事務監査 등 議政活動에 임함으로써 시민의 福利增進 및 權利伸張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財務局長 이하 關係公務員이 합심 단결하여 불합리한 稅制改善을 위한 對政府 建議 등 부단한 노력을 傾注하여 많은 成果를 거두어 주셨으며, 會計 및 財産管理에 있어서 부정의 素地를 一掃하기 위한 制度改善을 통하여 民願을 解消하는 등 市政發展에 寄與한 바 컸다고 우리 委員들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또한 委員 여러분은 지난 議政活動을 경험 삼아 執行部の 不法, 不當한 行政行爲에 대하여는 是正 促求하고, 民願解消 및 시민 便益增進을 위한 行政行爲에 대하여는 協助와 支援을 아끼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며, 財務局 또한 정부의 計劃이나 指示에 의지하지 말고 現場에서 知得한 시민의 바람이 稅制에 관한 법령과 제도의 整備・補完・改善에 反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報告事項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報告事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室 徐東石; 專門委員室 徐東石입니다.

當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을 報告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 26일 서울特別市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을 서울특별시장이 提出하여 동월 29일 議長으로부터 당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1993년 2월 10일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특별시장이 提出하여 동월 11일 議長으로부터 당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1993년 2월 12일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 및 서울特別市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條例案을 서울특별시장이 提出하여 동월 13일 議長으로부터 當 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1993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의 92년도 行政事務監査 結果에 대한 處理結果 報告書를 提出하여 오늘 配付해 드렸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財務局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

(10時 39分)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제1항 財務局所管 93年度 主要事業計劃報告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局長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존경하는 朴尙東 委員長님, 그리고 財務經濟 委員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家庭에 기쁨과 희망이 늘 함께하는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길 祈願하면서,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60회 市議會 臨時會에서 財務局所管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1년에 市의회가 開院된 이래 여러 議員님들께서 어려운 與

件下에서도 활기찬 議政活動을 통하여 우리 財務局所管 業務에 관하여 많은 指導를 하여 주신데 힘입어 많은 部分에서 괄목할만한 改善과 發展을 이룩하여 地方自治의 기틀이 착실하게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우리 所屬 公務員들은 議員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指導와 적극적인 協助를 통하여 더 큰 發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93년도 主要業務計劃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報告)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 여러분의 質疑와 答辯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守 委員님.

○李秉守 委員;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442억 7,200만원이거든요, 재산매각수입이요. 그런데 이 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시유지 매각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부분에서 매년 다음연도에 雜種財産으로써.....

○委員長 朴尙東;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守 委員; 앉아서 答辯하셔도 좋습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다음연도에 雜種市有財産으로써 행정목적 수행상 보존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재산의 목록 중에서 저희들이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다음연도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매각한 재산이 520억원이라는 뜻입니다.

○李秉守 委員; 그러면 이 시유지하고 替費地 매각대금하고는 별개의.....

○財務局長 金東勳; 네, 별개입니다. 替費地 賣却은 전액 특별회계 賣却收入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것은 일반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시유지입니다. 순수한 시유지.

○李秉守 委員; 그것이요?

○財務局長 金東勳; 네

○李秉守 委員;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 시유지, 替費地 작년 賣却 實績이.....

○財務局長 金東勳;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李秉守 委員; 아, 이 세외수입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財務局長 金東勳; 네, 이것은 一般會計 稅外收入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替費地는 區劃整理事業費特別會計에 計上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네, 그럼 알았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에 93년도 市有地·替費地 賣却計劃 해서 시유지의 目標가 752억원, 替費地 賣却 目標가 2,627억원이거든요. 그런데 92년도에 市有地·替費地 賣却이 2,141억원인데.....

○財務局長 金東勳; 네?

○李秉守 委員; 작년도에 두 가지 합하면.

○財務局長 金東勳; 네.

○李秉守 委員; 금년도에 이 둘을 합하면 3,379억원이거든요. 지난해에도 이것이 당초 계획 대비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이 저조했는데 금년에 이것이 실행이 가능합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사유지 매각부분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舊基洞 외교관 공개부지는 외무부에서 매입하는 것이 되겠고 다만,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공개 입찰 매각, 56억 원어치인데 이런 정도는 賣却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替費地를 작년엔 1,533억 원어치밖에 매각을 못했는데 금년에 2,627억 원 매각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替費地 매각을 下半期, 10월 이후에 本格化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월 27일, 앞으로 한 3일 후가 되겠습니다만 2월 27일 제일 첫회 매각을 실시해서 연간 25회에 걸쳐서 공개매각을 할 豫定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서두르기 때문에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 總力을 傾注하겠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런데 이 사유지 매각은 별 질문이 없겠지만 체비지는 작년 경험으로 봐서, 그리고 재작년 또 여러 가지 情況 與件으로 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판단하는 것이고, 替費地 賣却條件을 종전보다 조금 緩和했지요?

○財務局長 金東勳; 네, 緩和했습니다.

○李秉守 委員; 조금?

○財務局長 金東勳; 네, 대금 納付條件을 緩和했습니다.

○李秉守 委員; 네, 완화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것이 과연 目標 達成이 實效性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金東勳;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10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서둘러서 연말까지 약 1,470억원

어치를 매각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큰 땅이 들어가서 그런 實績을 거양했습니다만 작년에는 年間 13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개매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횟수를 倍增해서 25회에 걸쳐서 公賣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다만, 현재 부동산의 買氣가 없어서 實需要者 중심으로 買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替費地 賣却 案内冊子를, 弘報物을 만들어서 實需要者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配付해 드려서 弘報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이것이 금년 2월 27일 賣却하는 첫 賣却 案内冊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엿그제 인쇄가 끝나서 財務經濟委員會 委員님들 事務室, 자택으로 이것을 發送을 해 드렸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런데 제가 替費地 賣却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言及을 하는 基準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保有하고 있는 替費地 중에 公共用地로써 使用할 어떤 用途計劃이 서 있는 것이야 뭐 賣却의 對象에서 除外가 되겠지요.

○財務局長 金東勳;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그 이외의 것은 과감하게 그 基準을 좀 緩和해서라도 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見解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수차례 경험에 의해서, 公賣 해 봤자 應札·入札者가 없으면 늘 계속 流札, 流札되어 오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네, 그렇습니다.

○李秉守 委員; 거기다가 替費地 같은 경우는 不義의 溫床, 放置함으로써 자꾸 온갖 민원이 惹起되고, 불법 점유다, 뭐다 해서 세수목적의 缺陷도 되고 이럴 바에는 條件을 과감하게 緩和해서라도 진짜 購買하고 싶은 사람의 購買欲을 頓굴 수

있도록 좀 과감하게 이 制度를 緩和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느냐?

○財務局長 金東勳;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事項이 隨意賣却과 豫定價格을 다운시키는 두 가지 事項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 事項은 지금 다하고 있는데. 隨意賣却은 현재는 不動產 去來가 不況期이니까 우리가 현재 隨意賣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몇 년 후에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好況이 되었을 때에는 1993년도 왜 隨意賣却으로 特惠를 주었느냐 하는 問題가 나올 素地가 있습니다. 그래서 隨意賣却은 현재 考慮하고 있지 않고 公賣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弘報를 해서 賣却하는 方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成業公社에서 施行하는 方法인데 그것은 流札되면 豫定價格에 10%를 다운시킵니다. 다음 公賣할 때. 그런데 이 事項은 자칫하면 買入하고자 하는 사람이 談合해서 계속 流札시켜서 터무니없이 土地價格을 다운시킬 그런 罅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로서는 施行하기가 아주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나머지 餘地 部分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買入者便宜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능한 方法을 모색해서 推進을 하겠습니다.

○李秉守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崔丁植 委員, 해 주시지요.

○崔丁植 委員; 지방세 과표 조정, 17페이지입니다. 토지등급 調整內譯에 있어서 筆地數가 866필지.....

○財務局長 金東勳; 86만 6,000필지입니다.

○崔丁植 委員; 아, 86만 6,000필지입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네.

- 崔丁植 委員; 이것은 等級이 決定된 事項입니까?
- 財務局長 金東勳; 그렇습니다. 86만 6,000필지가 다 등급이 결정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 崔丁植 委員; 등급으로?
- 財務局長 金東勳; 네.
- 崔丁植 委員; 그러면 여기서 밑에 地域指數改善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적용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 財務局長 金東勳; 그렇지요.
- 崔丁植 委員; 適用이 되어 있습니까?
- 財務局長 金東勳; 네.
- 崔丁植 委員; 제가 왜 그것을 여쭙어 보느냐 하면, 이것이 어떤 公務員들의 裁量權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事項인지 아니면 이것이 決定된 사항인지?
- 財務局長 金東勳; 이것은 裁量の 餘地가 거의 없습니다.
- 崔丁植 委員; 없습니까?
- 財務局長 金東勳; 네, 그러니까 建物課標는 금년에 調整을 하지 않고 작년 과표를 그대로 했습니다. 92년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신축건물의 경우에 과표가 m²당 13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93년도에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신축건물은 m²당 13만 3,000원으로 아주 固定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新築建物이 중구 명동에 있는 것이나 강서구 傍花洞에 있는 것이나 이 課標金額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經濟的인 活用度를 따진다면 중구 명동에 있는 건물이 훨씬 活用도가 높고 아마 建物價格도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指數를 差等 適用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부속토

지가격, 바로 등급이, 토지등급이 確定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適用하는 것이지 公務員의 裁量 餘地는 없습니다.

○崔丁植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質問하겠습니다. 7페이지 稅外收入에 財産賃貸收入이 있습니다. 그것이 92년 豫算에 119%가 超過된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豫算目標額은 6억 700만원이었었는데 賃貸料收入이 7억 2,300만원이 徵收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崔丁植 委員; 초과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賃貸收入은 財産에 대한 鑑定價格의 一定率을 저희들이 賃貸料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豫算에는 6억 700만원으로 計上했었습니다만 賃貸料를 算定해서 92년도에 들어서서 그 財産에 대해서 鑑定을 하니깐 鑑定料가 다소 計上했던 것보다 높게 나와서 超過 徵收된 것입니다.

○崔丁植 委員; 使用料로 마찬가지로입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사용료는, 이것은 재산사용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종전에 한전과 통신공사의 통신케이블, 한전의 전선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相互免除主義 原則에 의해서, 內容을 말씀드리면 한전과 통신공사는 서울시에다 한전주, 통신케이블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한전주나 통신케이블을 移設할 때에는 서울시는 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相互免除主義에 의해서 이것을 免除를 해 왔었는데 작년도에 일부 이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占用料를. 그래서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 徵收가 늘어났습니다.

○崔丁植 委員; 事業場收入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金東勳; 이것은 實績이 低調한데, 建設資材事業所의 收入입니다. 당초에 建設자재 生産을 위해서 建設자재 事業소를 設치해서 運營할 때 우리가 51억 1,300만원의 歲入이 들어올 것으로 豫想했는데 자재生産계획이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폭 줄어서 實績이 이렇게 低調하게 되었습니다.

○崔丁植 委員; 資材生産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財務局長 金東勳; 골재입니다, 골재. 서울시가 각종 공공사업을 施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골재를 生産하는 것입니다. 아스콘, 일부 아스콘이 들어가 있고, 모래, 자갈 등 골재입니다.

○崔丁植 委員;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稅外收入에 대한 좀 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財務局長 金東勳;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 중에서 각종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各種 認許可에 대한 수수료, 占用料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 책정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넘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 것이 정부의 物價安定對策에 의해서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지난 1월에 세외수입 관련 部署의 장을 전부 모아놓고 現行料金策定基準,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調整한다면 얼마를 調整하는 것이 합당하겠는지 그 資料를 전부 만들어서 推進을 하도록 指針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部分에서 상당한 稅外收入이 더 徵收가 될 것으로 豫想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목을, 새로운 세외수입의 세목을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법규의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과태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새로운 세목으로써 더 증설하는 그러한 내용을 또 推進하고 있습니다.

○崔丁植 委員;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財産賃貸收入과 서울시가 賃借해 쓰고 있는 歲入部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떠한 개선의 方法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財務局長 金東勳; 賃貸收入은 鑑定價格에 의해서 법상 또는 조례상의 賃貸料率을 適用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固定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財産을 賃借해서 쓰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資料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崔丁植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울시청이 앞으로 이제..... 그 동안에 많은 論難이 있습니다만 廳舍가 비좁아서 각 別館을 賃借해 쓰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본 廳舍를 賃貸해 주고 또 다른 데에서 賃借해 쓰고 하는 그러한 矛盾點은 改善할 用意이 있으신지?

○財務局長 金東勳; 지금 저희..... 자세한 자료는 또 調査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사무실 用途로써 賃借해서 쓰고 있는 것은 地下鐵建設本部和 交通局이 들어가 있는 建物, 무교동이 되겠습니다만 그 건물만 賃借해 쓰고 있고 餘地 사무실 用途로 賃借해 쓰고 있는 것은, 아,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市政開發研究院, 작년에 發足된 市政開發研究院이

강남구 논현동에 賃借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賃貸해 준 財産은 현재 시금고인 商業銀行 일부와 名 區廳에 있는 金庫部分이 있는데, 그러한 部分들의 그것을 모아서 地下鐵建設本部나 交通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立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物理的으로, 計算上으로 分類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內容에 대해서는 좋은 점을 指摘해 주셨는데 財産管理를 좀더 效率的으로 한다고 하는 意味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면밀히 調査해서 報告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崔丁植 委員; 지금 商業銀行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商業銀行을 시금고만을 賃貸하지 않고 전체 商業銀行 支店을 賃貸해 준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理由가 있으셨는지 答辯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지금 각 구청의 금고는 金庫部分만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 本廳에는 金庫部分과 支店部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金庫部分과 支店部分간에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쪽 金庫에서 金券을 떼어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또 여·수신을 취급하는 지점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런 部分 때문에 이것이 당초부터 統合되어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檢討를 해서 措置를 할 事項이라고 생각합니다.

○崔丁植 委員; 시중은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의 전 예산과 시민의 재산을 特定銀行에, 그것도 시장의 固有權限으로 계약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고 監視하고 監督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商業銀行에 대한 어떤 特惠라고 하는 의혹이 풀릴 수 있는 구체적인 答辯을 좀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상업은행이 시금고로 運營되어 온 것은 1915년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金融通貨委員會라든가, 財務部에서 각 시중은행의 金庫 指定을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은행은 각 도 금고, 농협은 각 군 금고, 이렇게 調整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商業銀行이 取扱하고 있는 전체 우리 公課金の 연간 취급건수가 2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노하우도 蓄積하고 있고 또 그것을 處理하기 위한 여러 가지 裝備도 지금 保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일시에 金庫를 다른 銀行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부수되는 막대한 혼란도 豫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고를 계속해서 이 은행으로 指定해 온 것이지 그 銀行에 대한 어떤 特惠 目的으로 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崔丁植 委員;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 銀行業務도 自律化되고 있습니다. 또 民營化되고 있습니다. 아까 금방 제일은행이 도 金庫를 맡고, 商業銀行이 무엇을 맡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地方自治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改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市中銀行이 상당히 자기들의 業務競爭이 굉장히 치열하고 심합니다. 특히 서울의 豫算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 그 좁은 市廳을 작년에 좀 더 늘려서까지 商業銀行에 주어야 될 그 理由가 무엇이며 앞으로 그것이 改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과거의 관례나 전례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금고의 변경은 현재로써는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商業銀行이 좁은 市廳 廳舍의 일부를 賃借해서 쓰고 있는 問題는, 이것은 저희들도 반드시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商業銀行보고 아주 금고와 인접된 部分, 건물이 한정됩니다만 아주 인접된 部分의 다른 개인용 건물을 賃借해서 들어가면 좋지않겠는가 하는 것을 打診을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시청 근처에 현재 상업은행이 쓰고 있는 청사 部分, 그 部分과 인접된 部分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이것이 실효는 못 봤습니다만 우선 금고와 지점과, 여·수신을 擔當하는 지점과는 상당히 근접되어 있어야만 諸般業務가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崔丁植 委員;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것이 隨意契約으로 치루어지는 事項이 아니고 公開競爭入札에 의해서 契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어느 것이요?

○崔丁植 委員; 은행과의 계약이, 시금고와.....

○財務局長 金東勳; 금고계약 말입니까?

○崔丁植 委員; 네.

○財務局長 金東勳; 아, 그것은 公開競爭으로 入札할 그런 事項은 아닙니다.

○崔丁植 委員; 賃貸도 마찬가지로입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임대요?

○崔丁植 委員; 네.

○財務局長 金東勳; 賃貸는 財産賃貸이니까요, 사무실 賃貸이

지요.

○崔丁植 委員; 隨意契約이 확실합니까, 隨意契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金庫契約은 當事者끼리 하는 契約이고, 그것은 公開契約은 아닙니다. 그것은 公開契約할 수 있는 그런 事項은 아닙니다, 금고계약은.

○崔丁植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金炯奎 委員님.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우리가 서로 내역을 알고 是正을 좀더 進展시키는, 개선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년도의 세외수입에 공채 및 차입금이 206억원이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12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124억원 불과합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12억원입니다.

○金炯奎 委員; 네, 12억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進度率이 겨우 6%에 불과한데, 이 구체적인 內容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런 立場이 못 된다고 한다면 書面으로 資料를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93년도 稅外收入 3,228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 속에 공채 및 차입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아울러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네.

○金炯奎 委員; 또한 92년도에 융자금 11억 4,000만원이 있는데 92년 12월 徵收實績이 7,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內容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네.

○金炯奎 委員; 92년도 시세 세입계산 마무리를 한다 해서 연도폐쇄기 期間에 600억원의 目標를 배시를 해서, 다시 말하자면 賦課對 滯納徵收 對比 50%를 目標額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50%에 대한 對策 問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金東勳; 네.

○金炯奎 委員; 그리고 93년도 일반회계 歲入豫算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豫算審議 過程에서도, 또는 常任委員會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지만 지금 우리 財務局의 稅政課의 意志를 다시 한 번 밝히는 立場에서 제가 묻습니다.

지금 취득세 4,872억 8,1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 計上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취득세예산액은 4,675억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지금 진도율로 보면 약 12.9%가 缺陷이 되어 있어요. 이런 狀態에서 금년도에 다시 4.2%를 徵收한다고 하는 것은 93년도 세입예산에서 7.1%의 稅收缺陷이 다시 또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취득세의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속단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에, 92년도 취득세 예산 계상시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바 있었습시다만 이것을 강한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당에서 기왕에 93년도 취득세가 4,872억 8,100만원에 과연 우리 재무국에서, 세정 당국에서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실현할 수 없다고 보는 그 점은 92년도 세입결함 12.9%의 결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 미루어 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이런 過程에서 만에 하나 이 취득세 세입결함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다른 예산상의 대책을 재무국 입장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에서 묻고, 또 금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금년에는 세수결함이 없겠다 하는 세정 당국의 意志를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지방세, 이 토지등급 조정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토지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의 사고팔고 하는 어떤 이익관계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입장에서 토지등급의 세수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속칭 말하는 中産層概念에 있는 우리 시민의 토지를,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價值的으로 換算하는 그런 입장에서 밤낮 현실화율을 提高시킨다고 하는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세금만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價額으로 환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이면 주택, 장기 보유자, 거래가 없는 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에 대한조정문제는 많은 시민에게 심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현실화율에 제고가 된다고 한다면 요즘과 같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의 중산층이 파괴됩니다. 이런 견지를 앞으로 어떠한 정책입장 또는 과세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아까 명동에 있는 건물과 변두리에 있는 건물의 용도에 의해서 차별적인 입장의 과세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변두리에 사는 서울시민

이 많습니다. 그러면 변두리에 사는 서울시민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建物價額이 떨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建物價額의 賣買去來 실제상에 있어서도 쳐주지도 않습니다. 가격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땅값만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去來實態가 있는데 불구하고 差等を 두는 것은 좋으나 변두리에 있는 지역의 건물의 토지, 건물에 대한 가격문제를 더욱 대폭 인하 調整할 用意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묻겠습니다.

결들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라고 23페이지입니다. "세출자금 배정 적정성의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매일 세출 소요자금 - 유선 요구 당일 배정한다", 이 意圖는 어떠한 意圖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또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구의 각 기관, 또 시청 내에 있는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에 차질은 오지 않겠는가, 또 차질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원칙이고 부수적으로 필요불가결 했을 때에는 집행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同僚委員 崔丁植 委員이 商業銀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는 어제 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셔서 경고해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우리 財務局長도 議會를 輕視하는 처사가, 대단히 분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商業銀行에 대한 契約滿了가 작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한 問題가 地方財政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일방적인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할지언

정 市議會에서 商業銀行에 대해서 과연 시금고를 꼭 指定해야 되느냐, 명백한 이유가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시의원들, 우리 財務經濟委員會뿐만 아니라 전체 시의원이 그것을 염려하고 지켜봐 왔고 그것이 논의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財務局長은 전체 시의원은 고사하고 財務經濟委員會 委員들에게도 一言半句 논의한 바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商業銀行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정권과 결탁된 銀行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장영자사건, 영동사건 또 최근에 정보사사건, 명동지점장 사건, 사회의 악역을 銀行이 대리한 商業銀行입니다. 이런 銀行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 서울시금고의 자금에 의해서 商業銀行이 존립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한 銀行에게 우리 천만시민이 내는 한 푼 두 푼의 세금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은행을 인가하는 財務部 當局의 후원이 어느 정도 어떻게 있을지언정, 그래서 商業銀行은 惡化一路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명동지점장 사건과 같이 꺾기에, 銀行預金 꺾기에, 수반되는 그와 같은 일이 저질러지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財務委員會에서 이 문제를 다시 論議를 하고 이래서 本委員 생각은 지난번에, 12월에 계약을 締結했었던 상업은행의 금고 지정 계약은 마땅히 取消가 되어야 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本委員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問題는 앞으로 財務委員會 여러 위원과 상의해서 정식 동의할 생각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惹起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슨 컴퓨터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은행에 주면

어떻게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理由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商業銀行에서 지금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이 컴퓨터시스템을 서울시의 所有로 만드는 對策을 우선 講究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실하고 부실한 은행의 經營問題, 이런 것을 수반하고 또한 그 부실한 은행경영을 수반하게 되면 서울시민에게 그만큼 은행서비스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금고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指定을 할 때 어떤 銀行이든지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 시금고를 잘 관리, 높은 利子로써 시금고에 보답을 하고, 改善이 되고, 이러한 銀行에게 우리는 항상 시금고를 指定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금고의 입출금 모든 전산시스템을 차제에 서울시 所有로 만드는 것인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商業銀行 所有인지, 소유라면 서울시 所有로 그 電算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하는 對策, 이런 것에 대한 財務局長의 見解를 밝혀주시고, 쉽사리 그런 見解를 밝힐 수 없는 立場이라고 한다면 좀더 研究檢討해서 정확한 市廳의 所信을 財務委員會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알고자 하는, 묻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金炯奎 委員님께서 좋은 指摘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의 공채 및 차입금 그리고 融資金의 징수내역 현황하고 93년도의 공채 및 차입금의 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00억원을, 우리가 92년도 부과했는데 징수 못한 1,200억원의 600억원을 각 구청에 배시해서 나머지

50%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600억원을 책정한 것은 사실은 100% 부과한 것이 100% 徵收되는 그런 稅目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 징수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해서 600억원을 徵收하도록 각 구청에 배시해서 현재 推進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지난 2월 17일인가 그 때까지 徵收한 것이 330억원이고 나머지가 현재 계속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部分, 나머지 50%까지 포함한 나머지 部分은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 856억원의 93년도 滯納稅 徵收 目標額 속에 포함되어서 93년도 滯納稅 徵收對象의 額數로 해서 저희들이 徵收를 하도록 이렇게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다시 말하자면 徵收權의 포기는 아니지요?

○財務局長 金東勳;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가지 더 金委員님께 말씀드릴 것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써 놓았습시다만 모든 滯納에 대해서는 財産照會를 全國적으로 지금 현재, 內務部를 통해서 全國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財産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른 地方에 財産이 나오면 그 財産을 쫓아가서 押留하는 方法으로 해서 債權을 반드시 確保하도록 이렇게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取得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92년도에 4,675억원의 취득세 目標額을 設定해 놓고 12.9%가 缺損이 났습니다. 93년도에 다시 또 전년도 목표액보다 4.2%를 徵收 목표액으로 해 놓은 것은 과다하게 策定된 것이 아니냐 이런 指摘의 말씀 이십니다.....

○金炯奎 委員; 아닙니다, 이것은 과다하게 策定한 것은 이미 예산상에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때 당시에도 누차 指摘을 했어도 執行部에서 이것을 修正할 意思가 전혀 없었기 때문

에 確定은 되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세정 당국의 意志가 과연 되느냐 이거예요.

○財務局長 金東勳;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의 거래, 부동산 거래가 92년도의 거래만큼 금년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部分은 바로 뒤에 아까 말씀하신 土地等級의 調整과 관련해서 17%, 작년도, 92년도 徵收對比 17%의 徵收料率은 發生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 점에 대해서 아까 地方稅土地課標 調整率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는 4.2%를 작년 對比 徵收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그 意志가 결과적으로는 去來가 없는 것은 분명하니 알고 있고 土地課標로써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意志이구만요?

○財務局長 金東勳; 저희들 計算해 낸 것은 작년도의 去來實績 對比 금년도 土地課標 등급조정을, 이것을 適用해서 이런 정도는 가능하겠다 라고 세워서 한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글썄, 그러니까 土地課標를 調整을 해서 稅金을 채우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東勳;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렇다고 한다고 했을 때 뒤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地方稅 土地課標 調整에 따르는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보유하고 있는 土地課標는 그런대로 되는데, 사고팔고 하는 취득세가 그 조정률에 의해서 보충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財務局長 金東勳; 네.

○金炯奎 委員;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등록세 0.8% 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이 등록세는 92년도 실적이 더 低調합니

다.

○金炯奎 委員; 보세요. 아니, 더 低調한데, 그러니까 더 低調하니깐, 다시 말하자면 92년도 등록세는 車輛臺數의 增加로 인한, 자동차등록세의 增加로 인해서 이런 정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4%밖에 進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84%, 진전되지 않은 작년도 對比해서 0.8%밖에 減額이 안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東勳;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이 얘기는 자동차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니까 등록세는 그것으로써 충당되는데 그렇게 되고도 0.8%가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취득세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0.8%가 감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취득세를 土地課標 조정율에 의해서 4.2% 徵收한다고 하는 것을 충당한다고 하는 意圖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세정 당국의 의지가 확실히 현실이 되지 못할 때에는, 제가 작년에 豫算審議했을 때에도 우리 稅政課長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민의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이게 서울시청에 관한 세입이기 때문에, 취득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논의가 좀 왜소하게 됩니다만 일반 자체에 들어가면 일반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주택의 문제까지 과급이 되어서 중산층이 破壞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청에 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전체 자치구, 전체 시민에 관한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토지효과 조정율에 의해서 稅收를 채운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이런 세정 당국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

서 이것을 다시 경고하고, 세정당국에서 이것을 課標 세수에 실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선 두고 보는 입장에서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그 다음에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중산층..... 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收入에 불과하고 매년 토지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현실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데 등급만 조정하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심각한 憂慮를 주고 있다. 중산층을 파괴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金炯奎 委員; 변두리, 변두리.

○財務局長 金東勳; 네, 그런데.....

○金炯奎 委員; 이 문안에서 상업용 건물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우리 서울시 대부분 변두리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토지등급을 현실화한다고 하는 것은 기왕에 정부가 確定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는 현실화를 일정수준까지, 지금 정부의 목표는 3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대비 등급조정이 30%에 이르면 바로 공시지가를 토지가격으로 이것을 책정을 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諸般 모든 거래세나 보유세가 매우 높은 율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에는 공시지가를 바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세나 보유세의 세율을 인하해서 土地等級의 현실화니 課標니 이런 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政策方向입니다. 그래서

○金炯奎 委員;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전에 우리 稅政擔當의 實務職員하고도 제가 討論한 적이 있습니다. 討論한 적이 있는데, 전국에서 꼭 30%의 현실화율을 지탱하고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政策的으로 일시에 課標를 適用해야 됩니다. 課標를 適用해서 그간에 많이 課稅를 물었던 사람들은 내려지는 것이고 그간에 적게 물었던 사람들은 30% 일시적으로 課稅가 되어야 됩니다. 課稅되어서 일시 負擔이 많았을 때에는 徵收方法을 徵收 猶豫措置를 해 준다든지 이것은 徵收方法의 기술상의 問題입니다. 이렇게 해서 全國적으로 統一된 地價를 維持해야 되지 지금 여기 現實化率, 現實化率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땅값이 떨어져 있는데 現實化率이 안 되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세 負擔에 대한 國民情緒에 맞지 않는 稅金 過重의 의도만 자꾸 되어서 國民和合에 沮害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漸進적으로 하느니보다는 어쨌든 30%라고 하는 것은 1/3의 토지가액만 政府에서 과세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弘報하고 서울시 전역의 30%를 時價에 의해서 과세하라 이거예요. 課稅해서 균일적으로 해서,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간에 15%, 10% 매겼었던, 그 擔稅하고 있었던 그분이 한꺼번에 過重한 세금이 들어가니까, 부과가 되어서 납부해야 되니까 그것은 財政負擔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徵收方法에 의해서 징수 猶豫措置를 해 준다든지 몇 년 償還措置를 해 준다든지, 徵收猶豫 몇 년 分割措置하는 것, 徵收 猶豫措置가 가능하니까 그와 같은 徵收方法으로써 그것을 서울시 주민에게 輕減을 할 수 있는 편리를 圖謀하고, 課稅標準은 全面的으로 30% 현실화율을 해도 전국적으로 이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땅값이 떨어졌을 때에도 현실화율에 못 미치니까 올라가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지역주민에게 가면 당신 시의원 되더니 서울시 세금만 자꾸 올라간다, 이것은 議員에 대한 질타를 면하기보다도 租稅理論上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 과세 현실화 때문에 덕 보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토지를 過多 保有하고 정말 서울시내에서 要地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덕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세금을 지금 변동리에 있는, 신개발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덤으로 더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庶民의 세금을 고루 分配하고, 서민의 稅金을 실질적으로 오히려 부자 稅金을 庶民이 물어주는 이런 逆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問題는 시간을 두고 調整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년도까지 이것을 調整해서 현실화율을 30%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90년도부터 지금 5년 동안의 세금은 변동리 사람들이 토지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이 商業用 서울 中心街에 있는 이 사람들 세금을 지금 변동리 사람들이 물고 있어요, 課稅標準 현실화율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政府의 意圖가 30%라고 한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전반적으로 30%해요.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課稅標準은 歲入徵收官이 決定한다는 그런 조항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법은 법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방세법을 通用하는 大韓民國의 自治團體가 여러 개 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놀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財務局長이나 市長이나 이런 사람들이 解決해야 돼요. 이런 것을 解決하지 않고 안이하게 政府에서 이렇게..... 일체 裁量도 없습니다. 裁量 없다고 해서 不正이 안 되는가, 非理가 없어요? 안 됩니다. 조속히 이와 같은 問題는 變두리에 있는 地域의 對策問題를 調整率로써 할 수 있는 데 까지 財務局長에 의해서 우리 執行部에서 이것을 調整을 하고, 그 밑에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로요. 變두리에 사는 사람들 땅값은 떨어지는데 왜 세금은 올라가느냐, 집은 점점 헐어서 집값도 쳐주지도 않는 이 판에 왜 建物에 대한 稅金이 이렇게 많으냐, 이 怨聲을 우리 財務局長은 調整을 하고, 中央에 건의해서 일시에 實施해요, 하등의 모순이 없어요.

○財務局長 金東勳;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뜻을 機會 있을 때마다 傳達해서, 또 主張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轉換이 될 수 있도록 저로써 갖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역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建物課標調整이 93년도에는 없다. 다만, 서울 전역이 1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0부터 108로 細分化한다, 건물 附屬土地價格. 이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왜 100을 固定해 놓고 100부터 108로 하느냐, 예를 들면 88부터 108까지로..... 100에서 더 引下하는 그런 건물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만 같이 포함해서 합리적인 稅金賦課가 될 수 있도록 저로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財務局長, 제가 정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指數, 프로테이지 問題를 잘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한국 경제가 발전 도상에 옛날에 고통 분

담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貸金을 抑制할 때 5%선, 3%선
어찌고 하는 이 프로테이지 概念에, 소위 말하자면 軍事獨裁
政權이나 專制政治에 의해서 이 프로테이지 가지고 국민을
湖塗하고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基
準價格이 문제입니다, 價格. 어떤 것은 108이고 어떤 것은
106이고 어떤 것은 100이고,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지고
하면 모르는 愚民, 우리 시민들은 뭐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금액이 問題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調整率도 19%니,
16%니 작년에는..... 우리 稅政課長 얘기로는 작년도 豫算에
취득세 할 때에는 그 때 당시에는 현실화율이 91년도에는
15%로 만들어 놓았는데 땅값이 올라가서 8%로 떨어졌으니
까 10몇%로 豫算 計算해야된다, 이런 프로테이지 장난하지
말아요. 그런 概念을 완전히 排除하고 명실공히 地方政府의,
서울시민의 재정을 運營하고 執行하는 그런 立場의 생각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歲出資金의 효율적 관리 部分에서 매일 세출 所
要資金을 有線으로 要求받아서 당일 배정하는 것, 이것을 꼭
이대로만 할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原則입니다. 아까 뭐 여
러 가지 事項이, 우리가 豫見하지 못한 事項, 돌발적인 事項
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委員님께서 걱정하
시는 바와 같이 附隨적으로 執行할 수 있는 方法도 물색해서
시정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方法으로 최
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각 部署에서 이것을..... 예산의
집행 이것을 너무 計劃性 없이 방만하게 執行되는 것을 防止
하기 위해서 原則을 이렇게 정해 놓고 저희들이 運營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 原則이 그런 計劃性 있는 執行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당일까지야 필요있겠느냐, 計劃은 事前計劃인데.....

○財務局長 金東勳;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添加해서 말씀드리면 各 事業所같은 데에서 이미 配定된 公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公금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配定되었는데 이 사업을 執行 안 해서 이 公금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또 이 事業을 위해서 또 公金配定 要求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確認해서, 配定된 公金の 餘裕資金이 있는지 없는지 確認해서 이것을 配定함으로 해서 餘裕資金의 利子收入 增大를 최대한 우리가 圖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좋은 意圖인데 그렇게 事業所에서 잔머리 쓰고 못되지는 것은 監査課에 넘겨서 그런 것은 措置를 하라고요, 措置. 措置를 하고, 基本的으로 財務局에서, 제가 생각할 때 돈을 關係機關에서 民願人이 돈 받아야..... 돈 걷는 것은 제대로 걷어 가는데 돈 받아야 될 事項을 배정을 안 해줬다, 이 配定에서 빠졌다 이래서 오히려 민원의 素地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네, 그런 것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래서 이 原則에다 하나 添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금의 과오납 이랄지 또 입찰 保證金에 대한 還收랄지 이러한 민원과 직결되는 事項은 配定된 金額에 우선해서 支拂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配定 안 됐다, 本廳의 財務局長한테 물어봐라, 區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洞事務所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시민들은 뭐합니까. 그

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렸는데 財務局長의 좋은 意圖가 이안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市民에게 불평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委員長 朴尙東; 財務局長, 그것.....

○金炯奎 委員; 아직 答辯.....

○委員長 朴尙東; 마지막 答辯에 대한 것은 아마 商業銀行의 問題 崔丁植 委員이 질의한 내용과 金炯奎 委員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원래 10시에 개의를 해서 市政開發研究院 業務報告를 午前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時間이, 우리가 조금 늦게 開議되었기 때문에 그 問題는.....

○財務局長 金東勳; 간단히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십시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구체적인 내용을 檢討해서 答辯을 다음 우리 常任委員會 때 해 주도록 두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財務局長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충분히, 여러 委員들이 納得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東勳;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러면 오늘 午前 質疑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財務局所管 93년도 主要事業計劃報告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財務局所管에 대한 常任委員會를 마치고 5분간 停會를 하고 바로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12分 會議中止)

(12時 21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院長 이하 幹部 여러분, 癸酉年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이 작년 10월 1일 開院 이래 우수한 研究院의 確保와 93년도 事業計劃 樹立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研究 元年을 맞이하는 금년에 設定된 자치구 基本計劃 檢討 외에 24개 研究課題를 만에 하나라도 執行部 行爲를 正當化시키는 결과나 전적으로 執行部 意圖에 좌우되어 시민의 바람과 現場感을 喪失한 研究性 성과품이 나오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가지고 研究하시어 그 결과가 市政發展에 寄與하고, 바람직한 서울의 미래상을 確立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당 委員會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市政開發研究院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

(12時 23分)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제2항 市政開發研究院所管 93년

도 主要事業計劃報告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院長님께서는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市政開發研究院의 崔相哲 院長입니다.

우선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연구원의 幹部職을 紹介를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 事務局長 柳千秀, 都市環境研究院長 柳明辰, 電算·資料室長 張英姬, 企劃調整部長 職務代理 金光中)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委員長님, 감사합니다.

지난 해 10월 1일 研究院을 發足시켜주신 이후 지금까지 약 4개월 半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研究院이 준비해온 一般現況과 93년 事業計劃에 대해서 報告 말씀드리겠습니다.

.....
(報告)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委員長님께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研究院이 보다 좀 자세한 研究院에 대한 설명도 올리고 또 연구원을 육성하는데 대한 激勵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애로사항도 말씀드릴 機會를 갖기 위해서 委員會 委員長님 여러분들을 본 研究院에 한 번 모시고 별도로 報告會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좋습니다. 院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를 위원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丁植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丁植 委員; 먼저 이러한 우수한 人材 여러분을 研究院으로 모셔서 서울시정 발전에 寄與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기대하면서 몇 가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院長님께서 아까 報告內容에 特採에 대한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구위원 4명과 수석위원 3명을 特採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特採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채와 공채가 나누어진 점, 꼭 특채를 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던지가 또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면, 아직 저희가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이 발족된 지가 얼마되지도 않고, 또 제 입장에서도 여기 업무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業務報告에 보면 一般 技術的인 問題들만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교통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환경문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만 여기 금년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일반 행정에 대한 연구도 하실 수 있으신지, 또 하실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불합리하고 또 모순되고 疑惑이 있던 그런 부분들도 과감히 시정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또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의 일반회계와 예산, 특별회계와 예산,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실 수 있는, 연구원에서 해 주실 수 있는 입장이신지 그 腹案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委員長님 答辯…….

○委員長 朴尙東; 네, 답변해 주십시오.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答辯올리겠습니다.

崔委員長님, 감사합니다.

特採와 공채를 구분한 가장 큰 이유는 새로 발족하는 연구원으로서 공채를 했을 경우에는 연구원의 階層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위원급과 수석위원의 경우에는 大學教授 또는 副教授級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수·부교수급 이상을 신문에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그러한 훌륭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그러한 公採를 했을 경우에도 교수·부교수급이 응모를 거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채를 불가피하게 했고, 특히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명단에 보시다시피 현직 교수님으로서 저희 연구원에 휴직 또는 派遣의 형태로 2년간 와 계시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다 대학으로 돌아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구위원님들은 특채를 했고, 또 수석연구원의 경우에도 이런 상위, 최소한 새로 발족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연구원 운영과 연구원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이 있어야만 연구원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분을 特採로 했습니다.

두 번째, 崔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技術的 研究課題에 너무 치중한 감이 있고 일반 행정연구가 좀 소홀히 된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저희 研究院으로서 절대 그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5개 연구과제 중에도 都市經營研究部の 研究分野를 본다면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법적지위에 대한 연구, 또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 또 서울시 産業構造 變化 내지 정책에 대한 연구, 부녀 복지회관, 사회지표설정 같은 일반 행정에 대한 연구도 저희 들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한 재정·경제분야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서울시의 하나의 씽크탱크로서 종합 행정에 대한 연구도 확장을 해나가고, 특히 본 연구원은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기업 행정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활성화할까 하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주어진 25개 연구과제와 특별 연구과정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연적 餘力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崔丁植 委員; 그러니까 特採에 대한 過程은 일단 公採 공고는 하셨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네, 수석연구원에 대해서는 公採를 했는데 거의 공채에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崔丁植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 部分은 알겠고.....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또 그리고 연구위원님들은 사실 우리 특채를 했지만 2년 후에는 다 돌아가실 분들입니다.

○崔丁植 委員; 院長님,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要求 같습시다만 아까 院長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期待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것은 서울시 의원이 자체에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기이 우리 훌륭한 인재 연구원 여러분들이 집결이 되셔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잘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 부정의 요소라든지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炯奎 委員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우선 崔博士님의 훌륭한 인재와 또 시정개발을 위한 우수한 두뇌를 이렇게 잘 갖추어서 이바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우선 서울특별시 市政開發研究院,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91년 12월에 서울시 市政開發研究院 育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해서 지금 서울시비에 의해서 우선 市政開發研究院의 모든 비용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실은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1일에 개원을 한 市政開發研究院이 태어나기도 전에 市政開發育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가결을 한바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시다만, 저는 당시에 시정개발육성에 관한 조례를 반대한 立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市政開發研究院이 지금 財團法人으로 되어 있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네, 財團法人입니다.

○金炯奎 委員; 이것은 민법 제32조 법인이기 때문에 主務官廳의 인·허가를 받으면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인데, 설립이 되기 이전에 育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定款과 이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狀態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定款이 있으면, 財團法人에 대한 定款이 있으면 그것을 좀 提出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에 없으시다면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崔委員께서 特採와 公採間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주 훌륭한 분을 잘 모셔오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작년에 崔院長님에게 개인적으로 또 제 私見으로 한 번 뵈고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법적지위 문

제 연구와 지목제 대비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 산업구조 변화 · 전망, 제조업 부문, 1파트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서울시 법적지위 문제와 지목제 대비라고 하는 행정조직 개편, 이것이 아주 대단히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행스럽게도 93년도의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開設이 되지 못한 관계도 있었습시다만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지금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서울시라고 하는 광역지구 단체가 자치구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를 감시 감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本委員은 見解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고, 물론 저의 견해가 틀리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말씀이 계시겠지만 1차적으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수평적 지방자치 구도하에서 과연 광역이라고 하는 자치단체, 서울시라고하는 이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문제의 행정조직은 상당히 개편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시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정부에서는 이런 데에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자체를 대비한 행정조직 개편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또 실효성 있게 이렇게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외국에 가서 잠깐 見聞한 바에 의하면 파리 같은 데에서 20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구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을 파리의 의원이 兼職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 또 그런 등등의 예가, 물론 기본적으로 자치제의 제도가 저희들 입장하고 다른 背景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는 캐나다 토론토의 메트로폴리탄의 자치구의 장도 시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自

治區制度, 다시 말하자면 廣域自治團體의 制度問題 같은 것,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겸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 문제가 과연 韓國情緒에 맞느냐, 또 이러한 문제는 아주 중대합니다. 그래서 현재 地方自治法上에 있는 자치구를 監督하려고 하는 이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의 그 意圖,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分離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의 모든 行政秩序가 改編되어야 된다 이런 등등해서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를 우리 최원장에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하는 서울시 법적지위문제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首都的인 입장, 또 國際都市라고 하는 立場에서 과연 일반 광역시·도 단위의 그런 자치단체와 같은 법적지위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問題도 研究問題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도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의 慧眼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크게 激勵와 그간의 研究課題를 잘 선정했다 하는 데에서 치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 여기서 최원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특별과제 사업이 있습니다. 또 國際交流事業이 있습니다. 연구지원 施設擴充이 부족해서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국제교류사업에, 또 출판사업, 이 내용을 보면 사람 60명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과연 할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이 잘못이지만,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사람 60명이..... 지금 현재 52명이지요. 이분이 이렇게 전부 할 수 있겠는가, 물론 議員으로서 시정의 경비를 낭비하는 입장에, 낭비는 아니더라도 확대되는 그런 입장의 말씀은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市政開發研究院은 정말 훌륭한 인재와

훌륭한 지식과 그 識見을 가지고 이제까지 伏魔殿이라고 하는 서울시 탈을 벗기고 그야말로 國際都市요 大韓民國 수도의 합리적인 都市經營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임원과 여러 가지 세비문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博士님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러신데, 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 이 어른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출판사업, 계간지 이것 논문 쓰는 일이 지금 현재 博士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봐져요. 研究分野에 오히려 소홀히 되고, 이 출판사업의 계간지나 여기의 消息誌나 이러한 데에 논문, 발표문 쓰는 데에 주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일단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人員이 적고 이러한 데에 큰 原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출간사업에.....

우선 이것은 세상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출간사업 위주의 연구사업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감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出刊事業部分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 시립대학이 있으니까 그 쪽 출간사업부에 맡긴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입장의 연구사업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市敎育院의 敎授活動 支援 같은 것, 출판부에 연구원 발간사업을 위탁하겠다. 자매도시와 교류하겠다, 지금 우리가 설립된 지 日淺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심혈을 기울이면 아직이 교류사업과 출판 사업과 이런 데에 눈 돌릴 시간보다는 목전에 시급한 지금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문제, 우리 도시경영에 관한 아까 연구과제 이런 데에 눈 돌릴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원장의 현재 연구원이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분들이 하는 기본적인 연구과제를 소상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우삼아 말씀드리면 인원 부족이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과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答辯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해 주신 육성조례와 정관에 대한 문제는 정관을 다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관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되는 내무부의 상당히 많은 개입의 여지를 정관에 넣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연구과제 중에서 구와 서울시 본청과의 관계, 또 광역지구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또 나아가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서울 법적지위 向上에 대해서 深度있고 보다 實效성이 높은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다른 외국의 대도시의 法的地位와 比較해서, 또 우리 서울시가 首都로서 국제적인 대도시로서의 자율성과 特殊性을 勘案해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등장되고 있는 서울시 분할론, 또 나아가서 서울시가 지나치게 肥大하다는 理由하나로 일종의 解體論까지 거론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본 연구원의 責任은 대단히 무겁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데 대한 본 연구원과 또 委員 여러분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構想을 본 연구원에 대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體系化를 시켜서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金炯奎 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 연구과제, 특수 연구과제, 국제교류, 출판, 주어진 인력으로서 이와 같은 방대한 일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연구 중심으로, 특히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특수 연구과제에다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연구원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출판업무의 경우에는 연구와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결과를 어떻게 하면 널리 官邊機關이나 시민들에게 알리느냐 하는 過程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을 연구와 별개로 출판 사업을 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 우리 연구원이 하는 활동 중에 국제교류활동도 연구원의 시간으로 본다면 극히 많은 時間이 所要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점을 勘案해서 주어진 연구인력이 너무 분산된 사업에 投入되지 않고 實現性 있고 서울시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연구원이나 가장 생산성이 높은 연구원으로 運營을 해 보겠다는 제 말씀으로 代替를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제가 잠깐 조금 添言하겠는데, 지금 일반 自治區에서 都市基本計劃이 우리시 정부 계획안으로 보면 지난 12월 31일까지 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檢討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 有數한 인력으로서의 獨自的인 基本計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었던 自治區의 도시기본계획을 양쪽에 對比해서 참 시정부 고위 당국자로 하여금 검토해서 어느 안이, 어느 기본계획을 우리 시정의 기본계획으로 세우느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自治區 基本計劃 檢討, 그러면 예를 들어서 永登浦區면 어떤 다른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가타부타, 그 成案하는 그 분들의 기술적이고 학문적으로 관계되어있는 그 분에 대한 문제를 아마 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수박 겉핥기식 檢討가 될 것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니까 연구원 자체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檢討를 해서 對比해서 어느 부 것이, 어떤 기본계획에 타당한가, 이 문제는 우리 서울특별시 정부 고위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決定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市政開發研究院이 獨立的인 연구의 결과가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연구되어 있는 것을 檢討하는 立場이 되는 市政開發研究院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 생각이 그런 것을 添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 문제랄지 출판사업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크게 염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연구직은 39명이고 일반직은 20명입니다. 일반직 20명 중에서도 관리직이 11명이에요. 11명. 그러면 각 연구직에 계신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이 연구했었던 논문을 출판에까지 옮기게 되는 그 과정을 연구직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연구한 결과를 출판에 넘기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일반직의 관리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연구와 출판을 分離한다고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네, 金委員님 감사합니다.

自治區 基本計劃 檢討라는 研究課題가 되어 있습니다만 본 研究院의 立場은 檢討的 次元을 떠나서 서울시의 22개 구의 20년 앞을 내다보고 또 區라는 지역 利己主義를 극복하는 計劃으로서의 調整 또 立案의 機能까지도 할 각오도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基本計劃은 法定 計劃으로서, 또 서울시 都市計劃委員會가 있고, 또 구의회에서도 審議를 해야 되고, 또 區 公德會 過程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研究院이 區 計劃을 立案, 決定한다 이런 연구는 표 현상 상당히 問題가 있지 않느냐,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만 研究課題로서는 조금 檢討하는 이런 形式을 빌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區計劃에 대한 상당한 깊이 있는 입안과정에 저희 연구원의 意見을 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래서 그 時限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저희들이 지금 아마 서울시 都市計劃局 當局에 의하면 이것을 5월까지 區 計劃에 대한 공청회 절차와 確定 節次를 밟겠다고 이렇게 日程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아직 거기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5월 이전에 市政開發研究院의 연구결과를 反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네, 그전에 저희 研究院의 意見을 제출하려고 그러합니다.

○金炯奎 委員; 그래서 최소한도 공청회가 5월까지라고 하지만 또 공청회 마쳐버리는 그런 자치구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2월이니까 최소한도 3월내에는 늦어도 市政開發研究院에서 研究한 結果 안을 基本計劃의 공

청회에 反映을 해서 그것이 收斂되고 그러는 節次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時急을 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93년도 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지금 年初인데 實現性 없는 研究課題가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哀惜합니다.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청 都市計劃 當局과 關係 區와 協議를 해서 저희 研究院의 意見이 時間 늦지 않도록 反映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렇게 하시고, 그와 같은 都市開發研究院은 市政의 政策決定은 아니거든요. 다만, 훌륭한 博士님들의 연구결과니까 그 연구결과는 서울시 정부 관계관에게만 자료를 주지 마시고 저희 시의원에게도 그 자료를 提供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만일에 저희들이 市政開發研究院에서 훌륭한 研究結果가 우리 議員들 간에 논의가 되었을 때 시 政府에서 反映이 안돼요. 이제까지 用役事業에 의해서 研究報告書를 수없이 用役을 해서 많이 맡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는 그간에 그 研究한 그 報告書가 그냥 휴지통에 들어가는 그런 結果가, 死藏되는 그런 結果가 허다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研究人力의 낭비랄지 시간의 낭비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市政에 反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연구된 그 報告書는 반드시 시 政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에게도 그것을 배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아울러서 答辯해 주세요.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네, 저희들이 연구한 연구결과는 집행부인 시 당국 뿐만 아니라 저는 의결기관인 시의회에도 반드시 저희들의 연구결과를 보고를 올려야 되는 것으로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지 말고 議員에게도 配布해 달라 이거예요, 議員에게도.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네, 저희들이 하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보고서들은 議員님들께 개별적으로 또는 關心을 가진 분들께 배포를 하는 이 配布線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러면 다음 會期를 맞이해서 市政開發研究院에 대한 報告와 더불어 또 質疑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의 質疑內容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와 구체적인 답변을 못 주셨더라도 대충 저의는 충분히 원장님과 수석연구원 여러분께서 理解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 公務員敎育院 敎授活動 支援 協議 中, 이런 것, 지금 이 人員도 不足한 研究원을 가지고 힘을 분산을 시키면 研究活動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몇 명 안 되는 研究院이니까 우선 주어진 課題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研究하시고, 힘을 분산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院長 中心으로 해서 渾然一體가 되어서 과연 우리 議員들이 期待하고 서울시민이 期待하는 만큼 훌륭한 市政開發研究院으로 發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敷衍해서 드리고, 이상으로 市政開發研究院所管 93年度主要事業計劃 報告에 대한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院長 이하 關係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市政開發研究院所管에 대한 會議를 마치

고 企劃管理室所管에 대한 會議 前에 잠시 停會를 한 이후에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3時 18分 會議中止)

(14時 28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癸酉年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惽心 團結하여 시민의 公僕으로서 未來指向的 行政計劃의 수립 및 시행,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한 민원해소 등 시민편익 增進에 노력한 結果 많은 成果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는 市政의 調整·總括機能을 淸분 발휘하여 불합리한 法規 및 制度를 과감히 改編, 改善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구현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시 組織 全般을 再診斷하여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市政 具現을 위한 組織體制가 確立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3. 서울特別市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4.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5.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

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7.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8. 서울特別市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30分)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 및 議事日程 第8項 서울特別市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條例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서울特別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朴尙東 委員長님, 그리고 財務經濟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새 政府 出帆을 앞두고 금년 들어서 첫 번째로 열리는 財務經濟委員會에서 93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 골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 企劃管理室은 물론 시全般에 걸쳐서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愛情어린 叱正으로 저희 市政을 조금 더 市民에게 가깝

게 運營될 수 있도록 指導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 서울시가 委員님 여러분들의 뜻 깊은 지도 하에 한걸음 한걸음 市民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밝아 나가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저희 企劃管理室에서도 서울시 業務 全般的인 事業이 충실히 잘 履行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열심히 計劃을 立案하고 豫算을 支援하며, 그리고 事業에 대한 進度 내지는 內容에 대한 審査分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法規의 制度和 市の 각종 行政 改善등 충분한 모든 分野에 걸친 檢討와 또 市民을 위한 制度의 改善 등에 각별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서울시가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叱正하여 주시는 대로 앞으로 市政이 무한히 發展될 것임을 저희들은 각오하고 일을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우선 대하고자 합니다. 겸해서 오늘 저희들 企劃管理室 傘下의 지금까지 있었던 人事異動된 幹部를 紹介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幹部紹介: 電子計算所長 蔡弘植, 法務擔當官 金炅圭)

그러면 저희들 上程된 議事日程에 따라서 저희들의 議事日程에 따르는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臨時會 財務經濟委員會에 上程된 企劃管理室所管 條例案 및 主要 制·改正 등 事由를 內容別로 說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上程된 案件은 總 6건으로서 公園綠地管理 事業所設置條例案과 그리고 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 그리고 建設技術審議 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廢止되는 것으로서는 自動車 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案과 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案을

각각 說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說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및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적으로 많은 업무가 증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 노후화 등으로 인한 관리의 질적 측면도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저희들이 도시가 現代化되고 또 앞으로 서울시가 國際都市로서 發展되기 위해서는 기왕에 設置되어 있는 施設物에 대한 安全과 그리고 그에 대한 完璧한 管理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절실히 실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問題에 대하여 그 동안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이 저희들 기술직의 충분한 시설물에 대한 診斷과 그리고 적절한 對應을 위해서는 현재 4개의 建設事業소를 사업소로서 存置를 하되 그 職級을 上向함으로써 檢討能力을 倍加시키는 것이 가장 切要하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5급으로 운영되어 왔던 建設事業소를 4급으로 上向하고, 下部組織을 補強함으로써 기술적으로 點檢과 그리고 診斷과 그리고 補修 자체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技術職 職級名稱을 지금까지는 시설서기관, 토목기정 혹은 건축기좌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一般行政職과 마찬가지로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呼稱이 改正됨에 따라서 종래의 기정을 서기관으로, 그리고 기좌를 사무관으로 바꾸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이것은 建設技術管理法이 施行이 되고 그 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서 저희들 서울시에든 지금까지 建設技術審議委員 數

를 100명 이내로 規定되어 왔던 것을 120명 이내로 조정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案이 되겠습니다.

이미 委員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自動車 登錄業務는 이제 登錄事業所에서 區廳으로 移管이 됩니다. 그 殘務를 위해서 登錄事業所 자체는 금년 6월말까지 存置되게 됨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로 自動車管理事業所를 廢止하기 위한 條例임을 說明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래에 저희들 公園에 관련되는 한 이것을 대부분이 區廳에 위임을 해 놓고 있었고, 또 南山管理事業所가 5級 所長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보라매공원은 4급으로 되어 있는 事項 등 다소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部分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청이 자치구로 발전되면서 그 豫算에 대한 問題와 관리에 대한 內部的인 委任만으로서는 施設管理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서 市有財産인 各種의 公園, 이것은 시가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結論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왕에 있던 녹지관리사업소를 公園녹지관리사업소로 하면서 그 밑에 다 여러 가지 즉,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용산공원, 독립공원 그리고 시민의 숲 관리 등 시유재산 公園을 직접 管理하도록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시내에 散在되고 있는 各種 소속이 불분명한 녹지대 즉, 분수대 등에 대한 管理도 맡겨서 管理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그 재산소유 형태별 管理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서 公園녹지관리사업소를 만들도록 한 事項입니다.

끝으로 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案입니다.

이것은 1962년도부터 실시하여 오던 常住人口調査가 廢止되고 住民登錄人口 統計로 代替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常住人口調査施行條例도 廢止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서울시가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구와 시, 그리고 우리 자치구인 행정을 遂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配慮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提案說明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室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서울特別市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4개 建設事業所長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上向 調整하고, 事業所 業務中 旣 구청장에게 委任한 陸橋 및 터널 補修를 削除하는 내용을 主要骨子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施設物의 양적 증가와 노후화로 유지관리 업무가 증가하여 기구개편과 관리자직급 상향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陸橋 및 터널 補修 業務 등의 일부 업무를 이미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기에 건설사업소장의 직급 상향조정 문제는 보다 신중한 檢討를 할 필요하다고 봅니다.

別添의 機構 및 定員調整 現況 등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照)

기구 및 정원조정 현황

(뒤에 실음)

.....
○專門委員 安錫洙; 다음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은 1992년 12월 26일 大統領令 제13786호로 개정 공포된 地方公務員任用令中改正令에 따라 技術職公務員의 職級 名稱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관계와 같이하기 위하여 해당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1992년 12월 26일 大統領令 제13790호로 改正 公布된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에 따라 建設審議委員 數를 100人 이내에서 120人 이내로 增員하고, 建設技術研究機關, 其他 關係機關에 技術檢討를 의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費用을 支給할 수 있는 規定을 新設하는 內容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別添의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 該當條文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照)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해당조문

(뒤에 실음)

.....
○專門委員 安錫洙; 다음은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

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은 自動車登錄事務 改善方案에 따라 92년 1월 1일부터 段階的으로 自動車管理事業所 業務를 區廳長에게 移管함에 관련된 각 조례의 조문 整備 및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를 改正하는 내용을 主要骨子로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問題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은 公園의 綜合開發計劃의 추진과 公園施設을 合理的으로 운영코자 現 녹지사업소, 綜合建設本部 造景部 및 南山公園管理事務所 외 4개 公園管理事務所를 統廢合하여 公園녹지관리사업소를 新設하는 내용으로써 都市公園의 효율적 관리, 公園·녹지 조성의 綜合的 計劃樹立 및 施行, 각종 묘목, 꽃묘, 잔디의 종합적 수요 측정과 생산공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類似業務를 擔當하는 機關을 統廢合하여 運營하는 것은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新設된 自動車管理事業소의 例에서 보듯이 管轄業務가 區廳에 移管됨에 따라 이번에 同事務所가 廢止되는 것을 볼 때에 機構 新設 및 調整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別添의 機構 및 定員 現況 등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參照)

기구 및 정원현황

(뒤에 실음)

.....
○專門委員 安錫洙; 마지막으로 서울特別市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條例案은 統計法 제3조에 의거하여 常住人口調查가 廢止되고 住民登錄人口 統計로 代替되어 同條例는 实效性이 없으므로 廢止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案件處理의 效率性を 기하기 위하여 안건을 分離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제3항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앞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감사합니다.

○金炯奎 委員; 지금 新舊條文 對比表에 의하면 제1조에 있어서 동부·서부·북부건설사업소입니다. 이것을 削除를 하고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다시 제가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있는 事項은 밑줄 친 部分 즉, "이 條例는" 그 자체만 제1조에서는 削除를 하는 事項입니다. 그리고 事業所는 종래와 같은 名稱 그대로 두는 事項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시지요. 그래서 職級을, 다시 말하자면 동부·서부·남부·북부 이 사업소를 두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직급을 地方土木技佐에서 技正으로 안 가고 서기관으로

지금 上向調整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金炯奎 委員; 그러면 기좌에서 불편한 점이 어떤 점이 있기에 이렇게 上向調整을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그 部分 제가 說明드리겠습니다.

바로 위 조항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에 보시면 1호와 2호는 그대로 현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 보시면 "한강 및 主要橋梁·高架道路·陸橋·터널 등 補修"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橋梁·高架道路 등 補修"로 고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漢江橋梁이라든지 또 漢江上에 없다 하더라도 주로 큰 橋梁, 예를 들자면 中浪川上에 놓여진 橋梁이라든지 그와 같은 교량, 그리고 高架道路 즉, 지금은 高架道路로 되어 있었지만 고가차도 등 이것의 補修 자체와 그리고 陸橋에 대해서는 區廳으로 하고, 나머지는 業務量이 더 늘어나도록 그렇게 調整이 된 事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지방토목기좌인 所長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그 施設에 대한 安全도와 또 補修方法과 그에 대한 적절한 時期 등을 合理的으로 點檢, 施設 補修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書記官으로 하고 그 書記官 밑에 書記官을 補佐하는 토목, 기술직을 더 충원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지금 업무 조정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업무가 더 줄었다고 저는 봐지고, 또 職級을 토목기좌에서..... 지방 시설서기관도 기술직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기술직에 서기관이라는 직명이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종래에는 기좌 혹은 기정,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기좌는 사무관으로, 또 기정은 서기관으로 이렇게.....

○金炯奎 委員; 그렇게 大統領令의 改正에 의해서 그렇게 統一的으로한다 그런 얘기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金炯奎 委員; 그런데 이런 側面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명 상에 이유가 있는 듯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업무가 오히려 더 줄어들어는 그런 立場이 되고 또 현재 있는 기정으로서, 더더구나 技術을 요하는 業務로 봐서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나라의 趨勢 立場에서, 심지어 정치권의 당의 機構까지도 축소해서 經費를 節減하는 이러한 時代的인 현상이 지금 우리 새 政府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趨勢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정부에서 고정 경비가 지금 우리 예산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이 때에 직급을 上向調整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를 좀더 深思熟考히 檢討를 해야 되겠고, 또한 서울시 職制라고 하는 것은 大統領令에 의한 직제 개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문제를 좀더,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뒤에 다른 조례안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問題를 실장의 의견을 듣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敷衍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있는 건설사업소가 설치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기좌 소장으로 설치된 것이 1968년입니다.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 서울시의 각종 기구와 직제로 볼 때에는 구청에서는 구청 소유 등 업무는 구청의 건설국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설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한강에 있는 橋梁만 하더라도 거의 그 때 비해서는 엄청난 숫자가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高架車道라든지 기타 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고 또 이에 대한 管理水準도 그 때 보다는 앞으로가 더 向上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또 기왕에 있던 施設이 차츰 그 年輪이 더해감으로 인해서 點檢의 頻度도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또는 세 번을 해야 할 形便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래의 기좌 즉, 토목기좌 한 사람이 소장으로서 기원이나 혹은 기사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검하던 수준 가지고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시설서기관으로 하면서 그 밑에 토목사무관을 붙임으로써 그 기능이 온전해 질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서울시 이외에 이미, 심지어 충남·북, 부산이나 대구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이미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는 저희들 실무적인 의견으로써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늦었다라는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意見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 4급으로 上向을 하더라도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炯奎 委員; 건설사업소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한 곳이 있어요. 제 말씀이 그 건설사업소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혹시라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사업소는 실질적인 立場에서 소장의 직급이 높고 낮은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補修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인원 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上에 보면 7급이 14명, 8급이 28명, 9급이 13명, 직 231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에는 기능직 밑에 또 日傭職이 있습니다. 日傭職, 이 日傭職들이 날이면 날마다 놀고 있습니다. 아, 日傭職이 노는 것이 아니라 技能職이 놀아요. 실지는 日傭職이 가서 일합니다. 技能職은 앉아서 놀고 먹습니다. 그러면 실지 이 건설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봉사해온 일용직을 기능직화한다고 하는 의미의 정원 조정해서 좀더 많은 보수 처에 인원을 적정히 배정을 해서 士氣昂揚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반 建設하는 현장에서 보면 그 반장, 그 사람이 중요하지 隊長이, 소장의 직급이 낮고 높음에 影響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타 自治團體에 비하면 우리가 오히려 늦었다. 이 늦은 것은, 늦고 낮고하는 것은 서울시 당국이 그만큼 이 분야에,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 분들에게 신경을 그만큼 써주지 못했고 이제 챙긴다 이런 얘기는 되겠습니다마, 기본적으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補修할 수 있는 그 현장 현장마다 적정한 팀장, 반장, 이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소장이 문제가 아

니예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이 소장 직급 上向調整을 反對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일용직, 이 勞務員을 技能職化시켜서 많은 補修하는데 걱정하고, 이제까지 일용직으로 勤務했었던 經驗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면을 定員調整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職級 上向調整에 대해서 나라의 趨勢와 또 建設事業所의 현실 정, 이런 立場에서 저는 제 意見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全潤杓 委員; 이것 지금 金委員 말씀마따나 上向調整되는 職級이 전부 管理職들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 지금 현재로써는 上向調整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니 일단 留保하는 것이 좋겠어요. 다음 會期에 한번 더 研究를 하도록 합시다.

○委員長 朴尙東;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全潤杓 委員; 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들 意見 없으십니까?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崔丁植 委員; 조례안 중 지금 서울特別市建設事業所設置條例案, 또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 이것이 직급 上向調整에 관한 건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렇습니다.

○崔丁植 委員;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 두 가지를 留

保하고 一括 上程 處理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래요. 그것…….

(「同意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니, 2건은 留保하고…….

○金炯奎 委員; 아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연스레 다른 것까지 留保한다고 하는 그런 論議가 된다고 하면 너무 비약 되는 立場인 것 같고, 개별적으로 委員들 意見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개별적으로 다 審議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2건을 留保를 하고 나머지를 一括 上程한다 그런 데에는 저는 反對 意見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것은, 議事進行은 제가 할 테니까, 제가 議事進行에 도움 될 수 있도록 議事進行發言하신 것이니까 參考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루고 있는 3항에 대해서 다른 委員님들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제3항에 대해서는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議事日程 제3항 서울特別市建設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處理에 대한 것을 意見を 묻겠습니다.

全潤杓 委員님께서 保留 動議를 해 주셨거든요. 保留 動議에 대해서 贊成 있습니까?

(「贊成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三請 있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保留 動議案이 成立이 되었습니다. 議題로 成立이

되었기 때문에 保留 動議案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일단 議事日程 제3항을 保留하기로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議事日程 제4항을 審査하겠습니다.

議事日程 제4항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있으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입니다.

○全潤杓 委員; 名稱이 다 바뀐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全潤杓 委員; 그러면 기정이다, 기감이다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없어졌습니다.

○全潤杓 委員; 그럼 기술자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것은 운용은 종전과 같은데 옛날의 기좌라든지 기정이라든지 하는 용어를, 예를 들어서 건축사무관, 토목사무관 이렇게 바꾸고, 5급은. 4급은 기정이라는 용어를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서기관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사항입니다.

○全潤杓 委員; 정부가 전부 통일을 했다는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全潤杓 委員; 異議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다.....

○委員長 朴尙東; 異議 없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名稱을 바꾸는 것이니까.....

議事日程 제4항 서울特別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等中改正條例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 제5항을 심사하겠습니다.

議事日程 제5항에 대해서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特別市技術審査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金委員님, 發言하시지요.

○金炯奎 委員; 委員이 100인에서 120인 이내 委員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20인이 증원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양해해 주시면 우리 技術審査官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하십시오.

○技術審査官 洪鍾敏; 技術審査官이 答辯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지난 연말 12월 26일 중앙부처에서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이 改正되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개정된 배경에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 국내 건설업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하다보

니까 각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는 그러한 委員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地下鐵 같은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特殊한 공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고, 건축분야라든가 전기·통신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계나 기술업계나 용역업계에 위원들을 더 많이 모시도록 그렇게 현실적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會가 몇 개가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委員會는 분야별로는 그것이..... 建設技術審議委員會 委員會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전공별로 토목분야라든가 건축, 전기, 설비, 조경, 교통, 상·하수도, 환경위생, 도시계획, 의장, 색채 이러한 분야로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더 필요한 委員들을 한두 명씩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총 20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분화하면 전문가이지 技術審査委員會가 아니잖아요.

○技術審査官 洪鍾敏; 總 위원들은 저희들이 120명 내외에서 委囑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委員會를 할 때마다 30인 이내의 위원들을, 그 분야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회의를 할 때에는 30인 이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공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 건축계획분야, 건축시공분야, 그 다음에 조경분야, 도시계획분야, 전기설비분야로 되니까 약 10인 내외의 위원들을 초청하게 되겠습니다.

요즈음 많이 늘어난 분야가 컴퓨터라든가 전기·통신분야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委員들을 委囑하도록 이렇게 되는 경향입니다.

○金炯奎 委員; 전 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建設技術審議委員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委員會 運營을 小委員會式으로 運營을 한다고 한다면 建設技術審議委員會 本來의 趣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問題는 지방정부에서 실지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建設技術審議委員會를 세분화시켜서 마치 小分野別委員會를 가지고 運營을 한다고 하는 것은 建設技術審議委員會 本來 趣旨와 어긋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명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술 현대화에 의한 그런 훌륭한 위원을 대체하고 해서 委囑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인 추가된 위원의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錦上添花의 기술심의가 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현행 집행부에서 建設技術審議委員會를 분야별 小審議委員會式으로 運營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運營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金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심사관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建設技術審議委員會는 120명 이내로 委囑을 하고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建築施工分野에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혹은 일곱 사람 이런 식으로 委囑을 미리 해 둡니다. 다만, 저희들이 審議를 해야 할 對象事業,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을 경우 여기에는 어떤 분을 그 건에 대해서 審議委員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小委員會式의 運營이 아니고 그때 동일한 분야의 동일한 委員이시지만 그 건에 관해서는 어느 委

員을 그 때 구체적으로 委員으로 委囑을 해서 심의에 임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업체에서 제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緣故者라든지 有關者는 排除시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풀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신력 측면에서 좋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지금 실장께서 설명한 의미의, 그런 의미의 建設技術審議委員會인지 본위원이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의 審議委員會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建設技術審議委員會는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공을 하는데 시공에 관계되는 사람만 그 委員會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몇 분 모셔서 듣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橋梁工事を 하면 橋梁에 관계되는 전문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流水量이랄지 거기 관계되는 地質學이랄지 여러 관계되는 부분의 총체적인 기술심사를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총체적인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설명한 것은 아까 기술심사관은 小파트別 분야의 심사위원, 또 실장께서 얘기하기는 조금 廣範圍하게 해서 관계인의 어떤 모임의 심사위원회 운영, 이래가지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뿐이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도 쓰레기매립장을 한다, 그 밑에 地質度가..... 뭐가 얼마가서 이것이 찰흙이냐 그렇지 않으면 汚水가 밑으로 스며들어서 지하 몇m線上에 나가서 인근에 오수가 민가에 浸透

가 되겠느냐, 거기에는 우물을 파게 될 때에는 그 오수가 몇 m까지 와서 그 오수를 먹게 되겠느냐, 이런 등등의 모든 전체적인 분야를 함께 기술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인줄을 본위원이 알았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방향인데, 그렇게 이상한 방향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증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런데 委員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그 狀況이 맞습니다. 이해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데 다만,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분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위원님의 숫자를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同一分野이지만 위원님들은 미리 많이 確保해두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위원을 그 審議에 임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풀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 분야가 전체적으로 15개 분야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 그 분야별로 15명으로 해 놓으면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분야에 열 사람씩 해서 150명으로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으로서 여러 가지 기술분야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분야별 委員님 숫자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對外的으로 公信力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막자 하는 얘기입니다.

○金炯奎 委員;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建設技術審議委員會 威力으로써 어떤 것을 방편 삼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意圖로 보이는데, 지금 실장의 설명을 들으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建設技術審議委員會는 그야말로 한 事件에 대

해서 여러 분야를 動員해서 完全無缺한, 이런 施工의 잘못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建設技術審議委員會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숫자가 많아서, 專門家가 많다고 해서 그 權威意識에 의해서 방편으로 하는 立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施工會社에서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진 지식인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못한 어떤 데에도 상당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서울시 정부 산하에 있는 建設技術審議委員會라고 하는 그 威壓에 의해서 방편으로 한다고 하는 思考方式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람이 다섯 명이든 일곱 명이든 우리가 기술적으로 문제화되어 있는, 普遍化되어 있는, 普遍化되어 있는 기술은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첨단화되고 이론이 많은 그 기술 분야에 사람이, 열 개 분야라면 열 사람이 모여서라도 그 기술에 대한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천하에 어떤 사람이라도 승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과 審査委員 委囑할 때 더더욱 세심한 技術審査官으로 하여금 主觀 있게, 所信 있게 판단해서 옳은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앞으로 이 機會에 의해서 증원하지 말고 그런 위원으로 대체 위촉할 것을 오히려 促求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金委員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 분야가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세분화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의위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저희들은 제안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金炯奎 委員; 여기에, 개정안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개정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왜 이런 蛇足を 붙입니까?

○技術審査官 洪鍾敏;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것이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上에 이러한 길이 트여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8조에 보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建設技術研究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技術檢討를 의뢰할 수 있는 길이 施行令에서 이것이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기술검토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터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 조례안에 反映을 했었습니다.

○金炯奎 委員; 정말 이것은 죄송한 얘기이고, 이것은 先後가 어떤 것이 앞이나 어느 것이 뒤냐 이것을 논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제10조제2항의 신설, 이 蛇足を 붙이는 것은 시 정부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것을 해서 판단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합니까?

○技術審査官 洪鍾敏;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金炯奎 委員;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편법으로 아무리 트여져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심사관 업무소관에서 필요로 할 때에는 연구기관에 검토 미리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것을 내놓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건설관계 심의위원회 조례에다 이것을 蛇足を 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이 先後냐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蛇足이

있으므로 해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이러한 방편적인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절대.....

이런 思考方式 가지고는 안돼요. 기술자가 기술자답게 해야 되지 왜 꿈무니 빼는 일을 왜 만드느냐, 기술자가 소신이 없으면 그만두고 다음에 공사 못 맡는 것이지, 이렇게 사족을 붙여서 審議委員이 고 하는 사람들이 소신 없는 일을..... 아, 우리 논의해 보았는데 이것 좀 아빨싸 하니까 연구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보자,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심의예요. 이런 사족을 붙여놓기 때문에 20명 증원하는 데에도 오해가 있고,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技術審査官 洪鍾敏; 이것은 委員님이 指摘하신 대로 運營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의 정신이 새로운 工程이나 새로운 기술이, 발달된 기술이 점점 건설 분야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새로운 尖端技術에 해당되는 委員들을 더 確保를 하게 되고, 또한 이것이 필요할 때에는 建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審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터놓은 것인데.....

○金炯奎 委員; 길을 터놓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10조제2항, 이 신설된 이 부분은 기술담관소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력을 집행할 때 얼마든지 이 조례로 안 넣어도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에요. 굳이 조례에다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술자가 되는 것이며, 기술자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 안 넣어 놓아도 건설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실무자들 선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의뢰해야지요. 그래서 그 결과

를 가지고 建設技術審議委員會 위원들 앞에 내놓고 거기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요. 이런 蛇足を 붙임으로 해서 20명 增員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서는 20명 증원할 이유가 뭐 있느냐? 건설업법의 그 취지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위원 100명 중에서 신기술, 세분화되어 있는 신기술 가진 분을 잘 선정해서 위촉하세요.

○技術審査官 洪鍾敏;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사항이, 金委員님指摘하신 그 두 가지 사항이 이번에 개정한 핵심 분야인데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反映해서 저희들이 建設技術審議委員會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趣旨에서 이것을 조례에다 반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金炯奎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반영 안 해도 업무를 取扱해서 모르는데 관계연구기관에 검토 의뢰하는 것이 공무집행의 자유로운 집행의 방식이지 이것을 조례로 넣음으로인 해서 그것을 앞가림을 하고 방편삼아서 하는 이런 職務態度는 안 된다 이거예요. 더더구나 건설업법시행령에 그렇게 취지 설명이 명분화 되어 있는데 무슨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제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建設技術審議委員會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편용밖에 안 돼요. 이런 방편용의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뭐 천하 없는 습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없애버려도 돼요. 방편용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실질적 의미의 技術審議委員會가 되어야 됩니다, 총체적인. 전 그렇게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質疑 좀 해 주시지요. 崔丁植 委員님.

○崔丁植 委員; 먼저 審議委員님을 위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이 됩니까?

○技術審査官 洪鍾敏; 당초 조례에 정해져 있는 100인 이내의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는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했습니다.

첫째, 대학교수들이 되고, 학계에 있는 분들은 대학교수들이 되고, 시공회사에 있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 그러니까 기술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이 분야에 시공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설계사무실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기술사나 박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이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많은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는 4급 이상,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 분야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분야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崔丁植 委員; 어떤 기본적인.....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시는 기본적인 내용은 없지요? 그냥 평가해서 뭐 이런 분야면 좋겠다, 대강 이렇게 해서 모시는 것 아니겠어요?

○技術審査官 洪鍾敏;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사나 박사 이상으로써 그 분야에 시공 경험이나.....

○崔丁植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저는 전문적인 분은 120명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1만 2,000명도 넘을 것으로 하는데, 특이한 어떤 기준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技術審査官 洪鍾敏;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입니다.

○崔丁植 委員; 제가 본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100인의 위원을 모시는 것보다 120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심의

가 앞으로 서울시 技術審議委員會에 도움이 된다면 본 조례안을 동의, 재청합니다.

○李秉守 委員; 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의견이 拘束力이 있지요?

○技術審査官 洪鍾敏; 네, 있습니다.

○李秉守 委員; 拘束力이?

○委員長 朴尙東;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李秉守 委員; 拘束力이 있으면 일단 執行機關에서 현행 100인을 120인으로 상향 기준해 놓고 그때그때 전문성을 봐서 기술자문도 구하고 하겠다는 그런 뜻, 취지에서 설치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니까 이것은 집행부 의견대로 그냥 하지요? 크게 쟁점이 될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것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委員長 朴尙東;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李聲九 委員; 하나 더 물어봅시다.

100인 이내라고 된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技術審査官 洪鍾敏; 10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은 89년도에 제정된 령이었습시다. 령에 근거해서 100인 이내로 무리 조례에 정해져 있었습시다.

○李聲九 委員; 그러면 신기술분야가 많이 세분화되어서 그쪽에 증원을 시켜야 된다 했는데, 주로 집행부 계획은 20인을 주로 어떤 분야에 배정할 계획입니까?

○技術審査官 洪鍾敏;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주로 환경·수자원분야, 교통분야 그 다음에 컴퓨터, 첨단 전기·통신분야로 주로 委囑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네, 잘 알겠습시다.

○委員長 朴尙東; 金順愛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順愛 委員; 委員長님, 저는 再請합니다.

○委員長 朴尙東;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議事日程 제5항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異議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委員님, 金委員의 뜻을 충분히 집행부가 알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異議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表決에 부치지 않도록 金委員님 理解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열심히 안할 때에는 그 때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다루면 되니까.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 기술심사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다음 議事日程 제6항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意見を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金炯奎 委員; 자치구에 自動車管理事業所가 設置되어서 그 쪽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廣域地方自治團體로서 自動車管理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自動車登錄業務에 관해서는 사실상 구청에서 다 시행하도록 하고 본청에서는 지도만 하도록 그렇게 됨으로서 이관에 따르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등록업무는 자치구에서 했는데 자동차관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大統領께서 企劃管理室長에게 벤츠 260 타는 사람이 누구있느냐? 물을 때 지장이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그 統計는 전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이 조례가 廢止되는데 廣域自治團體로서.....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통계는 전부 전산관리까지 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市廳?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렇다면 자동차관리를 시 政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것은 통계적인 숫자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각 區별로 관리를 해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동차에 관련되는 각종 민원이 대체로 약 한 서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를 종전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만 取扱함

으로 인해서 거리라든지 또 位置라든지 또 煩雜度라든지 이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22개 구, 다시 말씀드리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구로 이관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증진시키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제가 생각할 때 자치구에 대한 직무의 한계, 위상, 광역의회의 광역자치단체의 위상, 이런 것이 지금 명쾌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 이 時點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時機尙早이고, 개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자동차 犯罪가 날로 증가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자동차의 기능화 되는 이 趨勢에서 좀더 통제적이고 합리적인 자동차, 지금 민원에 관한 등록업무에 대한 문제만 자치구에 이관하는 것이지 총체적인 자동차관리를 시에서, 시정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른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參考資料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승인까지 했다고 참고로 써 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여간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하나라도 법을 폐지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좀더 時機尙早에 관한 問題가 아니냐, 내용을 개정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자동차등록사무에 대한 민원업무에 대해서 자치구에 이관해서 거기서 등록사무를 하는 것이지 등록업무 자체 전부가 자동차관리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觀點에서 本委員은 그런 時機尙早의 問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再考하실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지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동차에 관련된 일체의 자동차 행정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관련되는 각종 민원, 예를 들어서 등록에서부터 검사 내지는 세금 또 담보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업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 등록된 차량이 150만대를 넘고 있는 이 때에 이 자체를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이미 시민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작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넘겨왔고 또한 금년 6월 말까지는 완전히 넘기되 자동차 전체적인, 金委員님 걱정하시는 그 分野에 대해서는 本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행정에 조금도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할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지금 본청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行政力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외국의 얘기를 듣고 보는 그런 見地에서 앞으로 서울시내 자동차가 輻輳되어 있는 이 時點에서 일괄적으로 한날한시에 자동차 등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時代가 未久에 곧 오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시 정부 廣域自治團體에서 統括하지 않고 다만 行政指示에 의해서, 그 지시가 적절한지 與否는 추후 論外로 하더라도 이것이 각 自治區에서 어느 自治區에서는 등록을 받고, 어느 自治區에서는 등록이 統制가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시행상의 집행의 誤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지금 계속적인 이와 같은 趨勢에 의해서 자동차가 증가되는 때는 이것은 행정력으로 도저히 막지 않으면 자동차의 機能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는 統制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將來的인

立場을 勘案해서 시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
니냐 이런 見解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異議 없습니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세요.

○金炯奎 委員; 그러면 自動車管理業所를 구청에서..... 따로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아닙니다. 구청에는 지난해에 地域交
通課가 생겼습니다. 과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과에서. 自動車管理事業所라고 하는 名稱이
없고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업무를 管掌을 하게 되겠군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그래서.....

○金炯奎 委員; 인원이 늘어나고 그런 일이.....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래서 그 업무는 현재 등록에 관련
되는 사항은 전부 전산으로, 우리 電算事業所하고 직결이 되
어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어디 사업소하고 직결이.....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우리 電算事業所하고, 시의. 그래서
현재 등록업무 내지는 그에 附隨되는 민원,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한 군데에서 하던 것이 22개 구로 分散된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사실상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면 전산업무도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金
委員님 걱정하신 대로 시에서는 전체적인 파악은 해야 되기
때문에 連結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렇다면.....

○委員長 朴尙東; 감사합니다.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고 議事日程 제6항 서울特別市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朴尙東; 議事日程 제7항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潤枸 委員; 이것 지금 행정부도 자꾸만 폐지하고 있는데 이것 아직 우리 委員들이 내용도 자세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 委員들도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되니까 이 다음 會期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留保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動議합니다.

(「同意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蘇中天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蘇中天 委員; 全潤枸 委員님이 지금 動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贊成을 하면서, 저희 委員님들이 연구하면서 참고가

되는 점을 제 나름대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自治區에서 管理하던 사항을 지금 우리 광역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蘇中天 委員;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공원이든가 녹지는 내 주위에, 소위 自治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여기는 저희들이 근본적인 업무의 性格을 가지고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관리업무를 구청에다 맡겨놓음으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거기에 관리의 費用이라든지 管理의 人力이라든지 이 狀況에 대해서 차츰차츰 自治區 나름대로의 異意가 提起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 즉, 본청의 재산을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제가 차츰 定着化되어가는 마당에 서울시 본청의 財産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自治區의 意見입니다.

또 특히 지금까지 自治區에서 아무 異意없이 관리해 오던,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噴水臺 등의 水景施設에 대해서도 왜 구청에서는 하등의 이익이 없는데도 구청서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정도까지 意見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財産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구청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는 것은 아까 蘇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能率이나 혹은 관리의 효율 등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글썬요, 그것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잘 가꾸어 놓느냐는 측면에서는 自治區에서 技術的으로 廣域團體에서 자치구에 어떤 配慮를 한다든가 이런 次元을

잘만 管理하면 내 동네에 있는 그 公園이나 綠地는 오히려 더 잘 가꾸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時間이 있으니까 저희 委員들께서도 다 研究하겠지만 執行部側에서 잘 研究하셔서 다음 회기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거의 委員님들 意見이 같을 줄 압니다. 全潤杓 委員님께서 議事日程 제7항에 대해서는 保留 動議를 해주셨습니다. 再請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保留 動議案이 議題로 成立되었습니다.

保留 動議案을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議事日程 제7항 서울特別市公園綠地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에 대한 保留 動議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議事日程 제8항 서울特別市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委員 있음)

蘇中天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蘇中天 委員; 지금까지는 常住人口調查를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해마다 調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廢止를 하고 이제는 住民登錄證 電算管理에 의해서 統計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蘇中天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지 거주인구하고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구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제 동네에서만 보더라도 상임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증을 옮기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마포구에서 거주를 하면서 성동구에 가 있는 사람도, 또 자치구끼리도 있고. 그래서 이 정확한 통계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지금 蘇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狀況도 常住人口調査는 영원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5년마다 확실히 한 번씩은 합니다. 하면서, 그 중간에 하던, 매년 하던 번거로움과 예산 등을 우선 住民登錄으로서 代替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全國적으로 統一된 事項이기 때문에 上程했습니다.

○蘇中天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잠깐……」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崔丁植 委員.

○崔丁植 委員; 이제 財務經濟委員會의 조례안은 8항까지, 마지막이지요?

○委員長 朴尙東; 네, 마지막입니다.

○崔丁植 委員; 8항의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제가 企劃室長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自動車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金委員님 말씀이 즉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自動車を 가진 사람이 이사를 했을 경우에 申告하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崔丁植 委員; 申告를 하지 않으면 罰則金を 물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崔丁植 委員; 그런 시민의 不利益을 行政적으로..... 그런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措置할 수 있는 方法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와 같은 民願을 여러 군데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住民登錄 移轉 申告時에 동시에 移轉이 될 수 있는 方法이 없느냐, 制度的으로. 이것을 우리 交通局에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崔丁植 委員; 檢討를 하신다니까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타 부서와의 그런 行政的인 불형조적인 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많은 부담과 피해를 보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서울시 산하의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것은 조금 議題 이외의 말씀입니다만 그 전에.....

○委員長 朴尙東; 崔丁植 委員님, 이 조례안 通過시키고 이따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한 이후에 질의와 답변이 있어요.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丁植 委員; 그 때 할까요?

○委員長 朴尙東; 네, 그 때 좀 해 주십시오.

○崔丁植 委員;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죄송합니다.

議事日程 제8항 서울特別市常住人口調查施行條例廢止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9. 企劃管理室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件(電子計算所包
含)

(16時 53分)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 제9항 企劃管理室所管 93
年度 主要事業計劃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企劃管理室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停會 좀……」 하는 委員 있음)

停會……. 한 10분간 좀 쉬었다가 하시도록 하지요. 10분간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54分 會議中止)

(16時 08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企劃管理室 93년도 主要事業計劃에 대한 것은 어제 本會議
에서 計劃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報告는 생략을
하고 바로 委員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뭉어서 電子計算所長의 業務報告도 있습니다만 그 內容도 일
괄 報告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委員 여러분
께서 企劃管理室 業務와 電子計算所의 業務에 대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네, 崔丁植 委員 해 주십시오.

○崔丁植 委員; 우선 아까 말씀드리던 것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 조례안을 폐지하면서 惹起되는 民願을 구청에서 시민의 불편이 없고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꼭 보완을 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꼭 민원을 解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집에 한번 있으니까 소방공무원이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적인 서로 보완관계라든지 시민의 민원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어찌 나왔습니까 했더니 消防施設이 未備하고 뭐 消防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차를 한잔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갔어요. 갔는데, 저녁에 한 8시쯤 되어서 전화가 왔어요. "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이 구청에서 집을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림 消防施設까지 포함을 해서 뭐 뭐 뭐를 해서 條件附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우리같은 사람이야 집지어서 竣工檢査 끝나면 들어와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消防公務員이 와서 또 이런다, 이런 얘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一元化가 되지 않고 자꾸 이것이 이러다보니까 市民들의 怨聲과 不信이 蔓延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市民들이 편안히 建築許可낼 때 꼭 消防施設 뭐 갖추어야 될 것이 있으면 갖추도록 해서.....

(「家庭집이 消防署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는 委員 있음)

음)

저희 집이 조그마해도 3층집인데 지하실이 있고 해서 방화문을 해야 되고, 防火燈으로 해야 되고 뭐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동네에 이런 집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 그것 참..... 뭐 여기 우리 서울시에는 그런 公務員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시다만 상당히 그 양반이 8시에 전화가 왔길래 "여보, 당신 지금 어디요" 제가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길래 지금 8시, 당신 勤務時間도 아니고, 집에 전화를 걸고 그러느냐, 불쾌한 그런 일이 있었습시다만 이 조그만 한 민원, 또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시민에 대한 불편이나 不利益이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行政的인 改革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室長님께서 기이 自動車管理事業所 조례가 廢止 되어서 이제 區廳으로 移管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뭐 제가 상세히 나열하지 않아도 그 동안의 민원이라든지 各 部處의 業務報告를 통해서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정말 서울의 시민과 시청과 구청과 동사무소가, 관청이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제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全潤枸 委員님.

○全潤枸 委員; 水道事業所에 대해서 한 번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各 水道事業所가 12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열 하나입니다.

○全潤枸 委員; 열 하나 있습니까. 이 각 水道事業所에서 工事を 할 적에 區廳에다 認可를 받고 하고 또 埋立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全潤枸 委員; 이것이 상당히 지금 時間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모양이던데, 그리고 구청의 담당과는 사무관이 아마 과장이고 수도사업소장은 서기관인데 이것이 協助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無用之物이다 하는 얘기가 수도사업소간에 나오고 있는데 室長은 사업소장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水道局으로 해서 區廳으로 집어넣든지, 過去 式으로 水道課가 있었지요, 그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全潤枸 委員; 그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구청장 책임하에 만들어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수도사업소장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사실상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수도, 그 외에 있다고 한다면 清掃라든지 기타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水道業務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9개 水道事業所로 있던 것을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同意를 해 주셔서 11개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로 될 때에는 적어도 수도사업소 하나가 2개 구역을 分掌해서 구청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룩되도록 하는 것이 根本的인 趣旨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청에다 옛날식으로 다시 수도과나 수도국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는 수도업무의 전문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업무 자체가 구청의 국으로 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사업소장으로, 소장 입장에서 보면 매주가 되고, 구청 입장에서 보면 격주로 구청의 간부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래서 수도업무에 대한 민원이나 기타 불편사항을 구청장과 가장 긴밀하게 협의 처리하도록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全潤杓 委員;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던데요. 이것 한 번 水道事業所長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번 물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알겠습니다.

○全潤杓 委員; 개인적인 이야기는 내가 所長을 하더라도 이것 問題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시지요.

○金順愛 委員; 全委員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補充해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을 준공하고 난 후 상가나 주택이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따라서 수도..... 물량도 늘어납니다, 또 가스도 쓸 수 있는 양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준공 후 다시 그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건설과 에서는 道路鋪裝을 하는 것을 약 5년 후에 다시 봐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건축을 받았을 경우 수도와 도시가스 동시에 자동으로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민원업무가 아주 축소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部分이 지금 현재 민원이 좀 많습니다. 왜 많으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이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해서 입주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道路鋪裝 관계로 인해서 다시 굴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굴착허가를 안 내주어서 가스가 안 들어가서 아주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온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참고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저……」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세요.

○崔丁植 委員; 건설사업소의 아까 職級問題 말씀하셔서 저거가 되었는데, 실장님, 건설사업소에서 도로정비하고 하는 것이 건설사업소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一般人한테, 下請業者도 있습니까? 직접 建設事業所에서만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이렇게 됩니다. 우선 구청하고 건설사업소하고를 나누어 놓은 것은 아까 조례에서 대체로 인식을 하셨겠지만 우선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폭으로 봐서 20m 미만의 도로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신규공사인 경우에는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하고 있고 관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업소가 하고 있는 것이 原則입니다. 다만, 건설사업소는 대체로 職員이 약 한 6·70명에서 많은 데는 80명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直營工事, 대부분 큰 工事로의 성격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른 건설업체에 都給施行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崔丁植 委員;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하면, 주택가 같은데 갑자기 장마가 졌다든지 해서 대단히 주민생활에 또 自動車事故危險負擔이 있고 해서 申告를 해도 빨리 되지를 않

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都給制냐 건설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사실 시민을 위한 공사거든요, 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절대적으로 시민 편에서 해야 되고 시민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데는 眼下 無人格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 주면서도 욕을 먹고 행정부가 不信을 받고 심지어는 與黨이 불신을 받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특히 건설사업본부에서 직접하는 일이든 아니면 하도급을 주는 일이든 간에,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아침에 러시아워시간에 공공연하게 길을 막아놓고 공사를 해요. 300m, 400m가 있어도 거기서 그냥 막아놓고 공사를 해요. 이런 무례한 짓은 없어야 되겠다, 아까 또 수도문제, 도시가스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도시가스문제도 각 지역의 업자들과 주민들 간에 상당히 불신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자는 와서 얼마에 놓겠다, 어떤 업자는 깎아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불신을 받게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一貫性이 있고 또 주민들 편에서 실지 이제는 공무원들, 일선 公務員들 스스로도 주민 편에 서야 됩니다, 업자 편에 서서는 안돼요. 이것이 주민들한테 나가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업자난 목인해 주고 뭐뭐 이런 誤解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誤解를 받을 때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은 얼마나 높겠느냐, 그런 問題, 우리 실장님께서서는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管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管

理問題라든지 民願問題, 이런 問題에 조금 室長님께서 關心을 좀 높이 가져 주십시오. 그래야 좀더 금년에는 가까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네, 말씀하시지요.

○蘇中天 委員; 下位職公務員 問題에 대해서 제가 늘 몇 차례 質疑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關心이 좀 많습니다.

洞事務所에서,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赤十字會費를 해마다 저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根據에 의해서 洞職員들이 그것을 저거하러 다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 근거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회비이기 때문에 會員으로서 모집되고 있습니다.

○蘇中天 委員; 그렇지 않잖아요, 실지는. 割當額이 있지요, 洞職員들한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직원에게 割當額보다는 會員 모집.....

○蘇中天 委員; 아, 그러니까 그것이, 동사무소에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거의 한 달간 동직원들이 매일 會費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地方自治時代가 열려서 定着이 되려고 하면 地方公務員들, 하위직공무원들한테 이런 업무를 주면 안 됩니다. 연구하셔서 이제 赤十字會費도 나라가 발전하고, 이제 富強했어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이제는 赤十字會에서 公共事業에 어떤 利益金으로 돌리는, 그래서 公務員들한테, 末端 公務員들한테 와서 사정하고, 一介有志라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5만원만 주십시오, 10만원만

주십시오, 이것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실지 그래요. 이것이 절대 앞으로는 中央政府에다도 建議를 하시고 우리 一線 洞 職員들한테 이런 것 하지 못하도록 研究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잘 알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두 번째, 이것 洞長問題 때문에 매일 區廳 가 면 제가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3월 30일이 되면 지금 현재 519개 동의 동장님들의 임기가 끝나지요, 1 차 5년 임기가? 3월 30일입니까, 언제입니까, 4월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모르.....

○蘇中天 委員; 네, 거의 3월인가 4월인가 그런데요, 그러니 까 2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再任用對象 申請을 받고 있 지요? 끝났습니까, 그것?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 推進狀況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室長님, 제가 여기서 많이 質疑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質疑가 안 되겠습니까만 이번에 확실하게 짚 어주실 것이 뭐냐하면 이번에 뭐냐하면 이번에 각 구청마다, 22개 자치구에 申請을 한 번 받아보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 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蘇中天 委員; 각 6급, 소위 지금 10년 이상한 직급에서 오 랫동안 근무한 분들, 지난번에 仁川市長으로 가신 분은 이런 答辯을 했어요. "실지 洞長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뭐라고 그랬는데요, 실 지 많습시다. 다 받아서 저 사람이 洞長으로 나가서 그 동이 발전할 수 있고 동민의 화합을 모을 수 있다고 그러면 현재 기준, 지금 임기가 5년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7년, 8년, 10

년, 13년, 14년 된 분이 있어요. 아주 이제는 동장을 해서 안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서 다 申請을 받아봐서 없는 곳은 뭐 對象, 나가려고 하는 분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그 洞長을 다시 任命을 하겠지만 나중에 재임용이 끝나고 나서 室長께서 여기 財務經濟委員會에 資料를 제출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蘇中天 委員; 신청 받은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꼭 참고해서 이 구청에 가면 조그만한 잘못, 아니면 뭐 어떻게 봅니까, 줄을 잘못 썼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 직급에서 오랫동안, 정말 저희가 봐도 지금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도 야, 참 안됐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企劃管理室長님이, 서울시를 總括하는 실장님이 챙겨줘야 합니다, 내 식구로 생각하고. 괜히 外壓에 의해서 눈치 보이려고 윗사람이 와서 아, 이사람 洞長 어쩌냐 그러면 區廳長 아무소리 못하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豫備役이 우리 서울시 132명의 議員입니다. 할 말 있습니다. 議員들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내 식구, 내 部下 이런 사람들을 끌어올렸을 때 공무원간에 어떤 紐帶關係가 持續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能率的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임용하실 때 각 區廳에 그것을 示達하셔서 그 문제는 다음에 任用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報告하셔서 이분은 申請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알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우리 蘇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새 政府 閣僚도 아주 새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분으로 지금 아마 選擇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地方自治가 실시된 이후 각 동에 동장의 얼굴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舊態依然한, 다시 말하자면 못된 짓 하는 洞長도 있습니다. 또 훌륭한 동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정부에 걸 맞는 정말 名實相符하게 동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사람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適任者가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명예퇴직제도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하위직 일선 공무원에서 실지 주민과 맞대서 있는 존경받을만한 훌륭한 하위직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으로 名譽退職을 시킨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양질의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洞長이 수 몇년 가까이, 5년, 10년, 8년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분이 훌륭해서 8년, 10년의 동장직을 가졌느냐 이것을 우리가 새 政府時代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장임기가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기획관리실장은 그 實態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한 우리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불신적인 입장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위에서 좋은 構想을 하고 정책을 펼치려 하더라도 그 洞長에 그 얼굴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에게는 불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중요한 時期에 洞長 재임용에 관한 문제는 아까 동료 蘇委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위직공무원으로서, 名譽退職을 해야 될 그런 분으로서, 주민의 존경을 받는

분으로서 申請을 받아서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동 행정업무에 登用을 함으로 해서 지방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그 동의 發展을 기할 수 있습니다. 화합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觀點에서 꼭 그렇게 實施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두 번째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技術審議委員會 條例에도 나왔습니다만 業務報告에, 主要業務計劃 18페이지에 技術審査機能 강화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교수, 기술사, 공무원 등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構成해서 審議하겠다 하는데 이 內容은 뭐니까? 우선 說明이 필요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이 狀況이 아까 제가 說明드렸던 것하고 連結이 됩니다만 우리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우선 약 120명선으로 사전에 위촉을 하고 특히 그 기술심사를 해야 할 그 該當分野에 전문가를 약 10명 내외로 120명 중에서 그 때 該當分野의 기술심의위원을 다시 選任해서 심사를 한다 하는 뜻입니다.

○金炯奎 委員; 글썄, 그래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심의위원회의 設置目的하고는 背馳되는 것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地下鐵 하면 地下鐵 設計審査를 하는 경우 地下鐵에는 軌道分野 專門家도 있어야 되지만 토목 專門家도 있어야 되고, 건축 專門家, 信號·通信·電子 이 名 分野가 다 포함이 되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分野別 專門家を 委囑을 해서 미리 했다가 그분들을 구체적인 事項에 대해서 10명 내외로 構成한다 그 뜻입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120명 전체가 審議委員會이지 分野別 審議委員會라고 하는 것은 大統領令에 명시되는 그런 趣旨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축조해서 10억 원 이상 200억원, 100억 원 이상 200억원, 200억원 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분야별 審議委員會를 構成함으로 해서 斷見이 斷面에 되는 이런, 종합적인 技術審査가 되지 못하고 단적인, 단면적인 입장의 심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심사기능 강화라고 한다면 정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120명을 전원 意見を 물어서 거기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최소한도 200억원 공사, 10억원 이사 200억원 공사라고 한다면 아마 서울시의 미관상 조정문제랄지 지하수문제랄지 지반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야별 審議委員會를 열 사람 열 사람 모아서 그룹으로 形成해서 심사를 하는 이런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根本的인 趣旨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狀況이기 때문에 우리 技術審査官이 예를 들어가면서 說明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炯奎 委員; 네, 그렇게 해 주세요.

○技術審査官 洪鍾敏; 技術審査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概略的인 事項은 방금 室長님께서 말씀드린 內容과 같습니다만 조금 補充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가 조금 不足하신 것 같아서 거기 設計審議나 用役審議에 나와 있는 금액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

령에 정해져 있는 그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나와 있는 교수나 기술사, 공무원 등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까 조례 개정되어 있는 사항과 聯關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에는 서울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해서 위촉장을 발부하는 분들이 120명이 되고, 그것은 한 열대여섯 개 각 분야별로 委員들이 열 명이나 두세 명이나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컴퓨터나 전기·전자·토목시공·건축분야.....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건설기술심의를 하는 건수가 작년 92년도 예를 보면 약 47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할 것 같으면 평균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 그러니까 이 審議對象은 22개 구청이나 사업소나 地下鐵建設本部, 綜合建設本部, 기타 본청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하루에 매일 한 건 내지 두 건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법 취지에도, 법조문에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상에 5인 내지 30인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能率的으로 하다 보니까 각 分野別로,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은 地下鐵이라든가 建築이라든가 아니면 橋梁이나 도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건축 같은 것을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건축계획이 있어야 하고 건축시공이 있어야 하고 또 건축설비분야가 있어야 하고 전기분야가 있어야 하고 토목분야가 있어야 하고 조경분야가 있어야 하고 기타 특수한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이 또 한두 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概略적으로

10명 내외로 하는 것이 能率的이다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令上에, 法令上에 규정은 5인 이상 30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한 10명 내외 위원으로 심의를 해도 별 큰 支障이 없고 대부분에 해당되는 분야가 망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조례에 통과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야별 심의위원회하고 한..... 내부의 일원입니까, 일원이 아니지요?

○技術審査官 洪鍾敏;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을 위촉을 해 놓고 만일에 金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20명 전체를 委員으로 모셔야하지 않겠느냐 한다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매일 하루에 오전에 한 건 오후에 두 건 해서 한 건 내지 두 건을 하는데, 그 분들을 매일 직업이 있는 분들인데 서울시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수들이라든가 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시공회사라든가 이런 전문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매일 그렇게 모실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분들을 또 120명을 열명 정도만 모신다고 하더라도 약 한 10일 내지 12일에 한 번씩은 參與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분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割愛한다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간에 법령상에 5인 내지 30인 이내로 모실 수 있다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업무도 충실히 할 수 있고, 일도 能率的으로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시간도 생각을 하는 그러한 범위내의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글쎄, 아마 집행..... 실지 운영하는데 문제

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것을 기술심사관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120명은.....

○技術審査官 洪鍾敏; 일단 위촉만 해 놓고.....

○金炯奎 委員; 위촉만 해 놓고.....

○技術審査官 洪鍾敏; 그분 중에서.....

○金炯奎 委員; 말하자면 法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專門家를 委囑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運營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方法으로 運營을 하겠다 지금 그런.....

○技術審査官 洪鍾敏; 네, 그렇습니다. 도로분야는 도로분야,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金炯奎 委員;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技術審査官 洪鍾敏;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이 서울시의 모든 構造物이 斷面的이고 歷史性이 없고 未來性이 없고 3년 내지 5년마다 다시 뜯어고치고 이런 問題가.....

○技術審査官 洪鍾敏;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분야에는 각 분야 위원들이 망라되어 있으니까 어느 사안, 그러니까 九老區廳에서 道路工事が 한 건 심의대상으로 올라왔다 하면.....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해서 지금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가지고도 충분히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全面的으로 제가 否定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에 최소한도 200억 원 이상 공사라고 假定을 했을 때 이 서울시의 시설물이 역사성이 없고 장래, 미래에 대한 그러한 용도와 규합되지 않고, 그래서 단면적인, 10년 앞을 못 내다본 서울시의 구조

물, 5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구조물, 이러한 것이 물론 우리 기술심사관이나 여기 서울시의 고위 관님들이 다 외국에서 보았지만 우리 서울시의 이와 같은 기술심사기능에 의해서 결국은 그러한 면이 단면적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여기에서 200억 원..... 건설업법이랄지 모든 法令에 나누어진 이런 限界가 있다손치더라도 실지 이렇게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될만한 것은 물론 하세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일에 쫓겨서 오히려 이런 분야별, 명분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해서 120명 위촉해 놓고 거기서 이의 제기하고 말 많고 그런 사람은 빼서 놔 두고 분야별 말 잘 듣는 사람은 빼서 놔 두고 분야별 말 잘 듣는 사람은 불러서 분야별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서울시 입장에 그저 동조적인 입장, 중요한 일일 때 자리나 비우고 이런 위원들, 이런 사람으로 해서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면 그대로 집행하고, 이런 입장을 오늘 분명히 警告 내지는 促求를 합니다만 다음에 제가 이 部分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는 반드시 제가 실질적인, 여러분의 잘 못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즉시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건물이, 서울시 구조물이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집행하는 일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促求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120명이라고 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원이 總體的이고 종합적인 見地에서 심의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技術審査官 洪鍾敏; 위원님이 指摘해 주시는 그 趣旨를 충분히 살려서 더 충실히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李聲九 委員님.

○李聲九 委員; 李聲九 委員입니다. 定都600년 사업이 바로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렇습니다.

○李聲九 委員; 汝矣島에, 汝矣島廣場의 얘기입니다. 地下駐車場을 設置하는 案이 있었는데, 그 밑에 地下駐車場을 만듭니까, 汝矣島廣場에?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이 問題 그..... 우리 시정연구관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聲九 委員; 네.

○市政研究官 康泓彬; 지금 말씀하신 汝矣島地下廣場은 아직은 구상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타당성과 계획안은 시정개발연구원에 別途의 팀을 만들어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상이 되었던 것은 汝矣島廣場에 地下駐車場이 핵심사항이라기보다는 汝矣島廣場 자체가 8만평에 이르는 큰 空間이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여의도의 업무기능일 동서로 단절이 되고 또 문민정부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練兵場같은 그런 공간을 계속 가진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도로를 지하화 한다든가 해서 장차 地下鐵路線이 거기에 들어갑니다만 지하철과 연계를 시키고 단절된 동서간의, 汝矣島의 동선을 다시 回復을 하고 또 필요한 주차기능 같은 것은 부대로 민자유치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겠다해서 기본적으로 구상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본위원이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우선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고, 그 다음 지하에 설치물을 운영하자면 조명비라든가 아무튼 비용이

상당히 上昇되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광화문에 地下駐車場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상당히..... 뭐 세일을 한 다든가 아마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같은 이치로 汝矣島에 地下駐車場을 만들 때 그런 운영의 부실이 또 따를 것이고 이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한 번 더 앞에 있었던 선례의 지하주차장을 참고해서 더 좀 深思熟考한 뒤에 決定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00년사업 중에 잘 理解가 안 되는 部分이 또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盤浦大橋 위에 분수터널을 만든다는 무슨 대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市政研究官 康泓彬; 이것도 역시, 분수터널이라든가 또는 어떤 구조물로 구체적인 구상을 지금 確定한 것은 물론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600년사업 중에서 서울의 새로운 얼굴 造成이라는 분야중에 서울의 강남, 강북을 機能的으로 또 象徴的으로 이것은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본위원의 질문 핵심은 분수터널, 한강다리 위에 잘 만들면 보기는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한 번 시도해 볼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곁들여 있습니다. 參考.....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래요.

○市政研究官 康泓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랜드 마크 造成이라는 名稱下에 여러 가지 방안을 檢討해 보자는 것인데, 基本概念은 그렇습니다. 강남, 강북이 워낙 이것이 떨어져 있고, 종로라든가 淸溪川이라든가 이런 東西를 連結하는 街路들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의식 속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청에서 藝術의 殿堂을 連

結하는 街路上에는 국가와 시의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죽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街路는, 파리 같으면 상제리제, 또 어디 같으면 뫼라는 길로서 連結이 되겠는데 이것이 하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는 한강 지점에 어떤 상당히 강한 요소가 있으면 참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요소가 좋겠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본다면 그런 분수터널을 한 데도 있고 또는 빛으로써 그런 役割을 하는 데도 있고 또 構造物을 세운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어느 것을 確定하는 것보다는 關聯分野라든가 학교라든가 혹은 藝術家라든가의 提案을 올해하고 내년에도 죽 받아서 그것을 전시하면서 시민의견도 들어보고 시의회에서 또 판단을 해 주시고 해서 뭐 해봄직하다 하고 판단이 되면 그 때 구체적인 안으로 확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네, 해 보자는데 본위원회도 오히려 찬동을 하면서 덧붙여서 이번에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모스크바, 북구라파로 해서 연수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 본위원이 느낀 바로도 서울의 자랑거리가 너무 안 없나, 쉽게 말해서 觀光客들이 좀 낮게 찾아올 수 있고 서울 자랑할만한 데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덧붙여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청 신축을 현재 자리에서 아주 高層으로 設計라는 말이 있던데 지금 신축안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企劃室長 한 번 얘기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시청 청사 新築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각계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推進案을 確定은 안했습니다. 다만, 지

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위치에 할 것이냐 혹은 다른 데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자체도 동시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
다. 우선 基本計劃案에다 位置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檢討가 있는 다음에 정해져야 되겠고 다만, 어느 정도
의 規模 즉,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라야 하겠느냐, 그리고 건
물 내에는 적어도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느냐 이러
한 기본적인 構想을 지금 하고 있는 段階입니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건물의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 이것은 현위치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혹은 현위치에서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렇습니다.

○李聲九 委員; 그럼 물은 김에 덧붙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린
다면, 현재 위치가 대략 面積이 어느 정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우리 시 본청 부지만 해서 한 3,600
평 됩니다.

○李聲九 委員;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기왕이면 서울에 자랑
할 것이 좀 많고, 시청이 정말 자랑스럽게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脈絡에서 우선 자리부터 넓게, 그래보면 다들 공감은 하
고 있지만 용산 8군 자리 같은 데 좀 널찍하게 잡아서 정말
子孫萬代에 자랑스럽고 世界的으로 觀光客까지는 우습지만
뭐 시청에 다녀보니까, 우리는 市議會 議員이니까 시청에 관
심을 두고 다녔습니다. 좀더 정말 멋진 시청 한번 지었으면
하는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덧붙여서 얘기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잘 알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法務擔當官님 나오셨습니까?

○法務擔當官 金炅圭; 네.

○蘇中天 委員; 제가 잠깐 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적용대상 그러면 1급부터 9급까지는 공무원이니까, 9급 이하에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일하는 雇傭職, 技能職, 常傭職, 日傭職 이렇게 있지요?

○法務擔當官 金炅圭; 네.

○蘇中天 委員;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여기 저기 질의를 해 봐도 영 一致가 안돼요. 총무처 답변, 시청, 우리 서울시 답변, 노동부 답변이 다 틀린데, 지금 일치된 것은 雇傭職하고 技能職은 公務員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一致가 됐습니다. 그런데 常傭職하고 日傭職은 이것은 아닙니다, 日傭職은 있지만 이것은 對象이 안 되고, 常傭職에 대해서는 見解가 다 다른데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法務擔當官 金炅圭; 法律的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技能職하고 그 다음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이라는 말은 우리가 通常的으로 常傭으로 인원을 쓴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용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의 용어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해서.....

○蘇中天 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현재 서울시에. 일용직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현재 서울시에는. 일용직이 그렇고 상용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이 이것을 모르시면 돼요, 서울시 법 적용을? 안 그래요? 서울시의 직제가 아닐지라도 각사업소나 이런 데에 쓰이는 그 용어를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는. 法務擔當官 立場에서.

○法務擔當官 金炅圭; 네,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法務擔當官이 온 지 며칠 안 되니까 양해를

하고......

○蘇中天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고용직, 기능직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것은 一致가 되는데 상용직에 대해서 좀 法務擔當官이 알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해 주십시오.

○法務擔當官 金炘圭; 알겠습니다.

○蘇中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오늘 그 정도로 하시지요, 그만합시다.

(「가만히.....」 하는 委員 있음)

간단하게 하고 質疑를 끝내도록 합시다.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서울 600年定都事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특별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전통문화의 보전, 전승, 뿌리 찾기를 하겠다고 어제 시장께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이 서울 600년의 정도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코, 어제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승인과 뿌리 찾기를 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문화부하고도 분명한 어떠한 紐帶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600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되어 있는 이러한 傳統文化의 보존과 전승과 뿌리 찾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慶熙宮을 복원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 정도 600년의 慶熙宮이냐, 중앙정부의 나라적인 立場에서 慶熙宮이냐, 雲峴宮이냐, 昌德宮이냐 등등 여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존, 승인, 뿌리 찾기, 이 문제가 여러 가

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어떠한 내용의 상세한 그러한 유대를 해서 예산은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정도600년 사업에 支援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저희들이 정도60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울이 都邑으로 정해진 것이 600년 되었다 하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이 정도 600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지난 날 우리들이 다소 看過했던 사항의 재발굴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文化財 등에 대해서는 조상의 흔적을 재발굴, 복원, 보존하는 일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들어가서 이것은 우리가 정도600년 사업의 一環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中央政府와 어느 정도로 구체화 協議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事業 자체에 대해서 性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현재 문화부의 文藝振興院 등과 結付시키면 예술의 전당 내지는 現代美術館 등은 우리 자체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것이 발굴되고 구체화되면서 이것은 중앙정부와 협의 될 사항은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慶熙宮 복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울시문화재 위원 또는 중앙문화재 위원 등을 통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金炯奎 委員;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술의 전당이 서울

시의 紀念事業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아니,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예술의.....

○金炯奎 委員; 글쎄, 예를 들었는데 예술의 전당이 서울시의 紀念事業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것은 우리의 紀念事業인 것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과 같이 성격적으로 國家事業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협의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그 뜻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風納土城 같은 것 復元을 우리 市費로 하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러니까 지금 김 위원님 예를 드신 風納土城 같은 것은 이것은 政府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의 支援이 있어야하는 事業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제가 오늘 실장 설명을 듣고 새로운 것을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정도600년 사업에 대한 이 문제가 600년 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을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意志 하나하고, 정도600년이 딱 되는 이 시점을 기념하는 어떤 기념사업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느꼈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세 가지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 하나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세 가지인 것이, 하나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를 다시 찾아보자는 뜻이 있고, 하나는 600년 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단순한.....

○金炯奎 委員; 紀念事業하고.....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紀念事業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해서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되도록 未來指向的인 일도 해 보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600년 사업이다. 라고 限定을 할 것이 아니고 서울600년 사업으로 命名을 해서 推進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이제 하다가, 시도를 해 보니까 안 되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안 되니까가 아니고.....

○金炯奎 委員; 名稱을 바꾸는.....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아니지요. 정도 600년 하면.....

○金炯奎 委員; 분명하게 해야지요. 몇 년 전부터 했었던 일인데.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분명히 되어 있지요. 정도600년 하면 즉, 1994년 11월 29일이 되지만 이것을 기리면서 과거를 다시 회상하고 미래 발전의 계기로 삼자 하는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시장이 어제 설명했었던 이 사항은 전부 거짓말이구먼.....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아니, 아닙니다.

○金炯奎 委員; 傳統文化, 서울600년 사업에 대한 문제는. 이래서 어제 제가 다른 部署에 말했지만 언어의 희롱이고 문자의 학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93년도 중요업무계획이라면.....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사업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흔히 우리가 서울 600년 하면 이것이 과거 것만 가지고 얘기되는 단순한 紀念事業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未來指向的인 現代都市

開發, 이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強調하는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지난 번 雲峴宮터에 대한 매입이 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600년 정도사업에 당연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나하나 모아서 지금 뿌리 찾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 事項하고 서울시 정부 事項하고 함께 連帶해서 됨으로 해서 정말 그런 定都 紀念事業을 完決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모두가 서울시 정부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報告는 되어 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우리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래서 제가 指摘하겠습니다.

문화도시 기반조성, 서울600년 사업, 민족정기 고양, 慶熙宮·雲峴宮·昌德宮, 제가 門外漢 탓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전부 중앙정부로 돌리세요. 또 혜화문, 이런 것 전부 중앙정부로 돌리세요. 또 풍납동 토성, 북한산 복원 이런 것도 전부 중앙정부로 돌리세요. 한강 遺跡地 복원, 偉人·忠臣 紀念遺物 發掘, 복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발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名實相符, 지금 銅像 제자리 찾기,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 나갑시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까지 연대해서, 限界를 지어서 우리가 일을 推進해야지 잘못하면 서울시가 정도600년 사업이라고 하는 이 명분 하에 우리 서울

시민의 재정만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區分해서 해 주시고, 시장께서도 보고할 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마치 서울시에서 하는 양 그렇게 報告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저러나 서울600년을 紀念하는 현시점의 紀念事業은 뭘지 象徵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선조에 대한, 600년 전의 선조에 대한 그 後孫으로서의 소임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실적인 입장의 서울시 600년을 기념하는 그런 사업의 구조물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울 600년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시민위원회에서 確定이 되어서 그 確定된 사업 자체에 대한 報告는 지난번에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金委員님 質問해 주신 이 部分은 다음 會議 때 저희들이 서울 600년 사업에 대해서 다시 整理를 해서 한 번 더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다음 報告에 參考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藝術의 전당이 지금 막 竣工하는 그런 立場에 있습니다. 이 예술의 전당이 오늘날에 600년 定都를 紀念하는 事業의 一環이다, 뭘지 이 세상에 사는 600년 後孫인 우리가 최소한도 서울시 政府에서 슬로건을 걸었지 않았으면 몰라도 걸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象徵적인 구조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구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뭘지 새로운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觀點에서 端的인 표현으로 정말 600년을 紀念하는 기념사업적인 정도사업이 무엇이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회기까지 報告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德基;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炯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이상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所管 93년도 主要事業計劃報告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所管에 대한 會議를 마치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에 대한 회의 전에 잠시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10分 會議中止)

(17時 29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金永根 社長님 이하 任職員 여러분,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社長 이하 任職員 여러분께서 悤心 團結하여 競賣率을 增加시키고, 農水産物 流通情報를 樹立, 分析, 加工 傳播하시고, 市場秩序를 確立함으로써 農水産物의 流通 원활화를 기하여 便益 增大에 寄與하여 왔으며, 또한 경영 합리화를 통하여 적자경영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농수산물의 流通 원활화와 公正去來를 통한 適正 價格 유지로 생산자인 농어민의 안정된 소득 보장과 소비자인 서울시민의 利益保護를 圖謀할 수 있도록 시장관리에 있

어 획기적인 改善對策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市場 周邊環境을 改善하기 위하여 農水産物 쓰레기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惡臭發生을 根絶하여 市場 周邊에 거주하는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도 公社의 노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協助하고 支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0.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93年度主要事業計劃報告의 件

(17時 31分)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 제10항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 93년도 主要事業計劃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金永根 社長님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네, 말씀하시지요.

○蘇中天 委員; 지금 업무계획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거의 작년부터 아는 내용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이 業務報告를 書面으로 하고, 질의할 것 있으면 각자 委員들이 좀 몇 가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委員님들, 蘇中天 委員의 議事進行發言에서 業務報告는 油印物로 代替를 하고, 業務報告는 略하도록 하고 바로 質疑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議事進行發言을 주셨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社長님 앉으셔서 委員들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우선 금년 들어 처음 우리 委員님들을 뵙는데 저희 幹部들 紹介를 하는 것이 인사가 될 것 같아서.....

○委員長 朴尙東;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幹部들을 우선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 監事 庾來鳳, 總務理事 李季春, 業務理事 徐延熙, 企劃室長 張東成, 總務部長 金善求, 管理部長 姜炳云, 流通部長 權正茂, 業務部長 李允熙, 糧穀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宋泰善)

○委員長 朴尙東; 委員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蘇中天 委員님.

○蘇中天 委員; 糧穀都賣市場을 우리 시에서 인수한 지가 4개월, 5개월이 지났나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네.

○蘇中天 委員; 그렇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8월 4일 인수를 해서.....

○蘇中天 委員; 이제 어느 정도는 업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引受해서 지금까지 管理해 오는 過程에서 혹시 우리 議會次元에서 작년에 우리가 큰 成果를 거두었다는 것보다도 가락시장도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構成해서 나름대로 그 現場

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機會도 가졌었는데, 糧穀都賣市場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流通되고 있는 쌀의 약 한 10% 정도밖에는 사실은 流通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떤 改善方法이나 改善策이 있다고 느껴지는 部分이 있으면 여기서 社長께서 한 번 말씀을 우선 해 주십시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糧穀市場을 저희들이 引受를 해서 처음에 引受 당시에는 서울시 市民의 負擔을 덜어드리는 方向에서 引受를 저희들이 하면서 豫算編成을 할 때도 서울시의 豫算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現狀維持되는 차원에서 우선 引受를 했습니다. 引受를 하다보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의 경우에는 농안법 하나에 의해서, 管理를 할 수 있는 法的根據가 하나밖에는 없었는데 糧穀都賣市場의 경우에는 糧穀管理法하고 또 農協法에 의해서 運營이 되는 問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活性化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時間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간에 商人들 위주의 糧穀市場이 運營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運營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變化를 갑자기 갖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商人들 商行爲에 상당한 萎縮이 되는 것 같아서 작년도 議會에서도 審議가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3월내에 糧穀流通에 대한 專門機關에 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活性化 方案을 일단 좀 알아보고, 그리고 議會 議員 여러분들에게 報告를 해서, 또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좀 實態 파악을 통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糧穀市場의 운영에 대한 바람이 무엇이다 하는 인식을 우선 농협이나 거기의 법인이나 仲買人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금년 上半期 內에 어떠한 變化를 가져와서 금년 안에

活性化시키는 方法을 講究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 都賣市場에 學者들로 構成된 諮問委員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問題를 諮問委員會에다 제시를 해서 그분들도 역시 專門機關에 용역을 주어서 문제 제기가 되는 방향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업체를 선정 중에 있어서 늦어도 3월초에 용역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問題點을 市議會 議員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올리고 의회의 高見을 들어가면서 서서히 금년 안에 활성화 방안을 確定짓는 方向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蘇中天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거기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대단히 지금..... 물론 引受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렵겠습니다만 법인, 仲介人도 問題지만 法人하고 農協 아마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3월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地方自治制가 實施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社長님이 管理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서울시 의회가 構成되어서 저희들이 커버할 것은 하고 또 改善할 것은 단호하게 改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10%밖에 流通을 지키지 못하는 곳을 필요해서 우리가 運營을 한다고 그러면 改善方法을 찾아야 되고, 도저히 안 된다, 效率價値가 없다고 그러면 막말로 해서 閉鎖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밀어부쳐서 한 번 해 볼 테니까 3월 이후에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尙東; 다른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守 委員님.

○李秉守 委員; 조금 전에 우리 金永根 社長님하고 對話 중에

92년도 假決算 結果 작년도에 약 한 40억원이 적자로 轉換하셨다고 하셨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매년 근 50억원 가까이 赤字運營을 하던 立場에서 볼 때 지난 1년간의 實績은 정말 鼓舞的일 정도로 아주 참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한 가지..... 물론 결과도 좋았지만 減價償却을 약 50억원을 基準으로 하면 아직도 黒字法人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신으로 금년 1년도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제가 금년도 業務計劃報告대충 한 번 훑어봤습니다. 이 중에 지금 하루에 쏟아지는 쓰레기가 약 한 570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네.

○李秉守 委員; 그렇게 된다고 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네.

○李秉守 委員; 그런데 그 중에 배추, 주로 이 야채류 系統이 절대 다수를 占할 것 아닙니까, 현재?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네, 한 70%.....

○李秉守 委員; 전으로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것을 줄이는 方案으로 包裝, 規格化해서 들어오도록 어떻게 한 번 提案해 보는 이런 案이 사실 檢討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한 번 答辯해 주십시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아까 우리 李秉守 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 한 해 우리 委員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또 때로는 상인들 지도 監督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勸책도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써왔습니다. 91년도 收益은 5억 7,100만원이 있었습시다만 이달 末日이면 완전히 精算이 되겠습니다만 假

精算을 해보니까 44억원이라고 하는 收益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假決算이 났습니다. 모든 成果는 역시 우리 財務經濟 委員 여러분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問題가 상당히 큰 問題인데, 根源的인 問題는 產地에서 規格化되어서 이것이 다듬어져서 우리 시장에 와서는 일체 다듬지 않고 이것이 상장이 되어서 이것이 消耗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국민소득 문제와 또 김장을 반드시 집에서 담구어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問題하고 關聯지어질 問題이고, 그 다음에 農村에서 이것이 選別이 되어서 規格화된 包裝에 대한 적극적인 支援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問題가 나와서 혹 학자들은 우리 國民所得이 한 1만불 이상은 되어야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농촌에서 그것이 選別이 되어서 規格化되어서 가락시장에 오기까지에는 사장의 立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쓰레기 問題갖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배추, 무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問題까지 검토가 되어서 요즘에 저희 시장하고 서울시에 와서 앞으로 배추, 무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引受를 해서 加工을 해서 사료화 하겠다, 그러니까 대지를 좀 어떻게 서울시가 支援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배추, 무 쓰레기에 대한 現地에서 처리하는 問題, 또 이것을 사료로 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問題가 다각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무, 배추 쓰레기 減量問題는 한 2·3년 내에 또

새로운 면에서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李秉守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生産地에서 완전히 규격화해서 가락시장까지 오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秉守 委員; 어제 서울시 업무 綜合報告에도 보면 1년에 쓰레기 매립 등등의 비용이 약 3,300억원, 1년에. 하루에 약 10억원이 든다 이거예요. 이것이 燒却政策으로 가면 이것이 燒却費用이 더 듭니다. 사실, 매립보다도 훨씬 더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더 드는데 지금 570톤, 약 600톤 하면 우리 서울시의 3만 2,000톤 중의 약 2%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루 10억 원 중의 2%하면 돈이 얼마예요? 이것을 서울시하고 議論해서 시골에서 분산, 이것이 없어져버려야 되지 이것이 시내로 들어오는 문제는 긴 眼目에서 制度的으로 막아야 됩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그래서 이번에 價格이, 埋立費가 별도로 추가되다 보니까 金錢的으로 負擔을 줄이면서 負擔을 덜하도록 하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가락시장이 飽和狀態가 되어서 搬入되는 物量을 積置할 場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리적으로 利用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골에서 다듬어 오는 方向으로 啓導를 하고, 또 여기에서 다듬어서 物量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負擔을 주는.....

○李秉守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많이 나오면 거기에서 收去料도 앞으로 많이 負擔하는 이런 식으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당연히 그렇게 가지요.

○李秉守 委員; 그렇게 되겠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社長 金永根; 네, 그렇게 해서

작년 年末에 안 다듬기 運動을 해서 상당한 成果를 거두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무·배추가 나오기 때문에 啓導를 하면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부담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대과 있지 않습니까, 큰 과를 와서 그것을 거기서 作業을 했는데 요즘에 負擔을 덜기 위해서 시골에서 완전히 해서, 정리해서 오는 趨勢가 되어서 많이 改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問題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秉守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尙東; 質疑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社長님이 원체 살림을 잘 사시고, 금년도..... 92년도 결산을 이제 目前에 두고 한 40억원이상의 黑字를 내셨다는 報告를 듣고 흐뭇합니다. 내년도는 더 倍加運動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민들 정말 가락시장을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發展해 주기를 바라면서, 委員님 여러분 오늘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所管 93년도 主要事業計劃報告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제1차 財務經濟委員會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社 社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50分 散會)

○出席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全潤杓 孟今龍 柳準向
金順愛 李秉守 崔丁植
金炯奎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財務局長 金東勳
市政開發研究院長 崔相哲
企劃管理室
室長 姜德基
市政研究官 康泓彬
技術審查官 洪鍾敏
法務擔當官 金炅圭
農水產物都賣市場
管理公社社長 金永根